

월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현안분석

Flat Tax의 개념과 경제적 효과

토지초과이득세의 쟁점

1996년 하반기 경제운영관련

주요정책과제

정책연구

정책토론티포트

재정정보

정책흐름, 재정통계

월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창간축사 2

- 열린 토론의 장을 기대하며/나용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창간사 3

- 재정정책의 길잡이가 될 터/최 광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현안분석 4

- Flat Tax의 개념과 경제적효과/전영준
- 토지초과이득세의 쟁점/노영훈
- 1996년 하반기 경제운영관련
주요정책과제/김종만·박종규

정책연구 46

- 교육재정 확충방안/박정수·안종석
-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한진권

정책토론 리포트 53

- 국세행정의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 국제조세워크숍
- 「신경제 장기구상」 세제부분

재정정보 69

정책흐름

- 1996년 1/4분기 국세실적
- 1996년 상반기 세법개정(안) 내용
- 조세부담률과 1인당 조세부담액

재정통계

1. 총재정 규모
2. 공공부문 규모
3.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4. 주요국의 조세부담률
5. 우리나라 세수 구성의 변천
6. 국제체계의 변천

열린 토론의 場을 기대하며

○ ○ ○ ○ ○ ○ ○ ○ ○ ○

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지난 30년간 중단없는 경제개발을 통해 우리 경제는 이제 국민 소득 1만달러시대를 열었고 선진국가들의 모임인 OECD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 진입의 문턱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후발 개도국의 추격과 선진국의 견제는 나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후발 개도국들은 저임금을 바탕으로 우리의 수출시장을 맹렬히 잠식하고 있고 선진국들은 시장개방과 정부개입의 축소라는 선진국 수준의 국제규범에 따를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도 우리의 경제운영과 성장전략은 일대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하여 특정 전략부문에 집중 투자하여 왔던 지난 개발연대의 성장전략은 이미 그 실효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제 자율과 창의, 그리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을 창출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전략은 양적 팽창이 아닌 질적 성숙으로서 정부가 아닌 시장기구 중심으로 경제운영방식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재정·조세정책의 측면에서도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형평성 증진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재정기능의 강화와 조세제도의 개혁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재정·조세제도의 개혁과 합리적인 경제정책의 수립을 지원하는 정책연구기관으로 한국조세연구원이 출범한 것도 이러한 개혁추진의 싱크탱크로서 그 역할이 요청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4년 가까운 기간 동안 재정 및 조세정책의 수립과 운용에 크게 기여를 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항상 아쉬움으로 대두되었던 것은 각종 정보와 정책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각계각층에게 신속히 전달되고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조세연구원이 중장기적인 정책연구를 넘어 국내·외 재정동향과 정책흐름을 시의적절하게 진단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 줄 월간 『재정포럼』을 창간하는 것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포럼』의 발간이 재정 및 조세정책에 대한 토론을 활성화하여 한국조세연구원의 연구에도 시의성과 현실성을 한층 더하여 주는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아울러 월간 『재정포럼』의 발간을 계기로 재정·조세정책 연구기관으로 출발한 한국조세연구원이 그 위상을 한층 드높일 수 있기를 바라며 『재정포럼』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재정정책의 길잡이가 될 터

○○○○○○○○

최 광
한국조세연구원 원장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의 경제와 사회는 세계화·정보화·지방화·노령화 등 그 제반 여건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WTO체제 출범과 OECD가입 추진 등으로 재화시장은 물론이고 서비스시장, 자본시장, 노동시장 모두에서 본격적인 경쟁시대에 돌입하게 되었고, 경제 규모의 확대와 구조의 고도화 등으로 경제의 스투화 및 소프트화도 크게 진전되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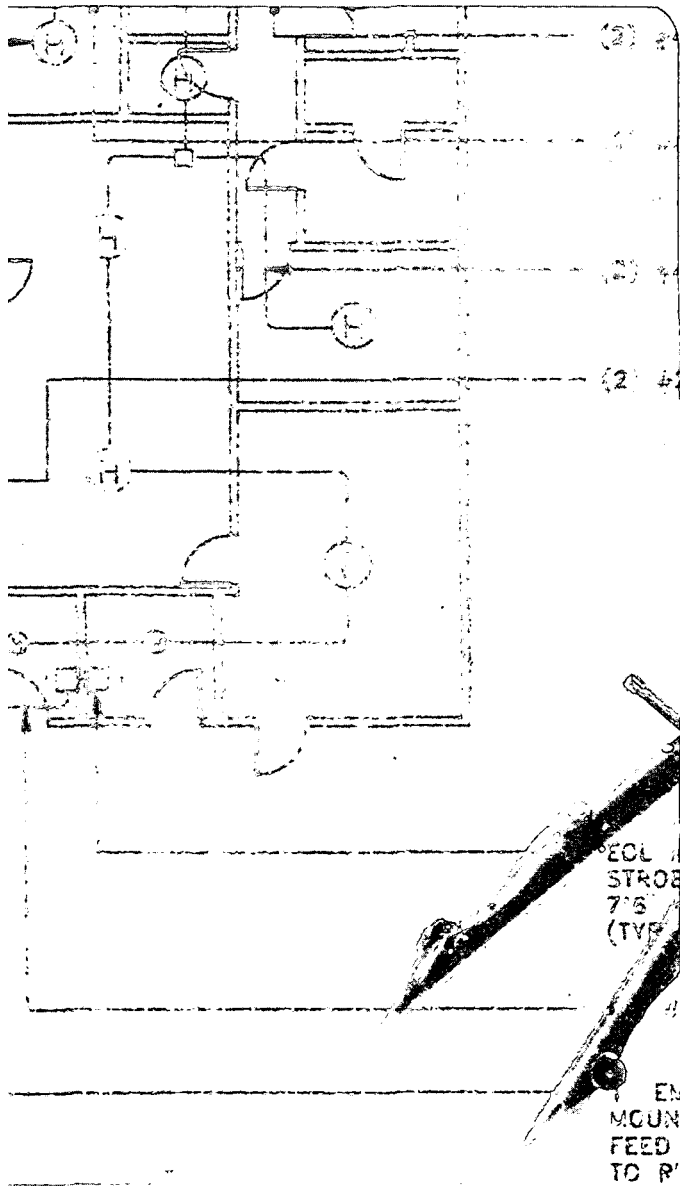
이와 같은 대내외적 환경변화는 조세·재정정책의 전통적인 역할과 제도의 효율성에 대한 재검토와 더불어 이들 정책에 대한 새로운 역할 부여 및 제도의 혁신적 재정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재정의 메커니즘과 재정활동의 본질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조사·연구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저희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이와 같은 시대적·사회적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조세 및 재정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대한 정확한 분석, 내부연구결과의 신속한 전달, 토론회 및 세미나 내용의 소개, 국내·외의 최근 재정동향 보고, 그리고 유용한 통계자료의 신속한 제공 등을 주요내용으로 전문가, 일반인, 그리고 정책당국에게 보다 유익하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월간지 『재정포럼』을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각론에 충실한 분석적 전문가의 역할과 더불어, 정책당국에 대한 건설적 비판자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茶山の 牧民心書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黃海의 濁流만 보고 사는 물고기는 東海의 맑은 물결을 모른다. 우리 모두는 黃海의 물고기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청렴결백해야 한다는 뜻과 아울러 세상을 보는 시야를 넓히고 사회현상을 올바르게 내다보아야 한다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비록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재정포럼』의 발간이 경제현상과 이론, 특히 재정에 관해 동해의 물고기처럼 우리 모두가 보다 넓은 시야를 갖는 데 일조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本誌가 정책당국·학계·일반국민들간을 잇는 가교의 역할, 공동의 관심사를 함께 논의하고 토의하는 토론의 장이 되도록 함으로써 한국 재정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 기탄 없는 질책, 우정 어린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안분석

- ▬ Flat Tax의 개념과 경제적 효과 / 전영준 · 6
- ▬ 토지초과이득세의 쟁점 / 노영훈 · 17
- ▬ 1996년 하반기 경제운영관련 주요정책과제 / 김종만 · 박종규 · 24

Flat Tax의 개념과 경제적 효과

전영준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미국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I. Flat Tax 논의의 배경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른 Flat Tax에 대한 논의의 배경은 현행 미국 조세제도의 여러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다.

Flat Tax는 지난 1월부터 진행된 미국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였다. 특히 공화당 대권주자의 한 명이었던 스티브 포브스(Steve Forbes)는 Flat Tax를 선거의 쟁점으로 제기하여 일시적이었지만 공화당 내의 보수파들로부터 막강한 지지를 받았으며 한때는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다. 당시 공화당 내의 대권주자들 중 밥 도울(Bob Dole)을 제외한 거의 모든 후보들이 제각기 나름대로의 Flat Tax안을 들고 나왔으며 또한 미국 상원의 켐프(Kemp) 위원회에 의해 의회 나름대로의 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Flat Tax에 대한 논의는 1980년대 초 로버트 홀(Robert Hall, 스탠포드 대학 교수)로부터 시작되었으며, 미국의 상원 및 하원에서는 Flat Tax의 도입을 위한 법안들이 지난 10년 동안 꾸준히 상정되고 논의된 바 있다. 이러한 Flat Tax 논의의 배경은 현행 미국조세제도의 여러 문제점에서 찾을 수 있다. 현행

미국의 조세제도는 그 체계가 너무 복잡하고 일반인의 조세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조세징수비용이 지나치게 높고 탈세와 조세회피가 만연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누진도와 조세제도 전반에 만연한 부문별 차등과세는 경제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학계와 정계에서는 이러한 현행 조세체계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내놓았다. 그 대표적인 방안의 하나가 현행 미국의 소득세 중심의 조세체계를 소비세(혹은 지출세) 중심의 조세체계로 전환하는 것이다. 소비세 중심의 조세체계는 비교적 단순하여 탈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체계는 기본적으로 자본에 대해 비과세하므로 현행 체계의 자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여 자본축적을 유도할 수 있으며 또한 그 운용에 따라 부문별 차등과세를 폐지하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는 개인에게, 투자를 제외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기업에게 동일한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Flat Tax 체계도 이러한 소비세의 한 유형으로 미국의 정계와 학계에서 논의되어 왔다. 세계 개편의 논의 과정에서 지나치게 공평성을 강조하는 우리의 현실에서 효율성의 제고를 그 기본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조세체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다.

Flat Tax에 대한 본 논문의 진행은 다음과 같다. 먼저 현행 미국의 조세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고 Flat Tax를 제외한 소비세의 유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다음 Flat Tax의 개념, 그 예상효과 및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고 필자 나름의 결론을 내리려 한다.

II. 미국 조세체계의 문제점

현행 미국 조세제도의 첫번째 문제점은 조세체계가 너무 복잡하여 일반인들이 이러한 조세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미국의 조세체계도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 소득공제, 세액공제와 여러 예외규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러한 조세체계의 단순화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

두번째로 조세징수비용(Compliance Cost)이 지나치게 높으며 또한 이 비

효율성의 제고를 기본목표로 하고 있는 Flat Tax체계는 세제 개편의 논의과정에서 지나치게 공평성을 강조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행 미국 조세제도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막대하여 효율성의 저해 비용이 미국의 연방개인소득세와 연방법인세 수입의 약 45.6%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용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조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의 장부정리, 조세제도의 학습, 납세신고서(Tax Return Form)의 작성, 인쇄 및 배포, 세무 감사, 범칙금의 징수 및 조세관련 소송에 대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비용이 너무 높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왔다.

다음으로 조세제도에 의한 효율성의 저해를 들 수 있다. 조세는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의 왜곡을 초래하여 필연적으로 효율성의 상실을 초래한다. 이러한 효율성 상실은 노동공급의 감소, 저축률 저하, 부문간 비효율적 자원배분, 신규산업 등장의 저해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부문간 비효율적 자원배분의 경우를 예로 들어본다면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의 경우, 배당소득과 기업이윤의 사내유보에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모두 과세되어 이중으로 과세되고 있다. 그러나 기업소득 중 이자 지급분은 공제되므로 자본소득에 대한 차등과세로 인해 효율성이 저해되고 또한 기업으로 하여금 차입에 의한 재원조달을 선호하게 하는 등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투자세액공제(Investment Tax Credit)의 경우, 주로 설비부문의 투자에 주어지므로 설비와 구조물의 투자결정에 왜곡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복잡한 조세체계의 부작용의 또 다른 형태로 탈세(Tax Evasion)와 조세회피(Tax Avoidance)의 만연을 들 수 있다. 많은 종류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예외규정의 존재는 납세자들로 하여금 탈루의 방법을 모색하게 하며 또한 납세자의 납부세액을 줄이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산업을 촉진시키고 새로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만들기 위한 로비활동을 촉진시키므로 자원을 비생산적인 부문에 배분한다.

홀(Hall)과 라부쉬카(Rabushka)는 현행 미국 조세제도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막대하여 효율성의 저해 비용이 미국의 연방개인소득세와 연방법인세 수입의 약 45.6%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다.

III. 소비세(혹은 지출세)의 유형

소비세 혹은 지출세는 모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소비에 대해서 단일세율로 단 한번만 과세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현재까지 거론된 소비세의 유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소매판매세(Retail Sales Tax)

이것은 소매단계의 재화와 용역의 판매에 대해 한번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The Economist의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현행의 연방개인소득세와 연방법인 소득세와 동일한 수준의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15%의 세율로 소매판매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 방법의 문제점은 소매판매액의 조작에 의한 탈세가 용이하다는 것이다. 특히 용역의 경우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부가가치세를 들 수 있다.

소득세 혹은 지출세는 모든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소비에 대해 단일세율로 단 한번만 과세한다는 것이다.

2. 부가가치세(VAT)

이 방법은 한 사업자의 판매액에서 중간재 및 생산요소의 구매액을 차감한 액수, 즉 부가가치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안이다.

이 방법은 모든 거래에 있어서 구입자와 구매자 모두에게 거래액이 기장(記帳)되므로 부가가치를 계산할 때 이중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에 의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와 같이 기장의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하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또한 소매판매세와 부가가치세는 그 조세부담이 저소득층에 보다 더 무겁게 나타난다는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소비성향은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소비세의 유형에는 종합지출세(Consumed Income Tax)와 Flat Tax가 있다.

3. 종합지출세(Consumed Income Tax) 혹은 무제한 저축공제(Unlimited Savings Allowance Tax)

각 납세자의 총소득에서 저축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제도로서 그 효과면에서는 소비에 과세한다는 점에서 소매판매세, 부가가치세와 같으나 누진세율 체계를 이용하여 각 납세자의 소비액에 따라 누진과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Integrated) Flat Tax

Flat Tax 체계하에서의 과세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그리고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의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자세한 Flat Tax 체계는 다음 장에서 설명되겠지만 이 체계하에서의 과세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Business Tax) 그리고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Individual Wage Tax)의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원천(Source), 즉 기업수준에서 이루어지고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는 최종귀착지(Destination), 즉 개인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또한 두 단계의 과세는 동일한 세율(Flat Rate)로 이루어지며 투자가 제외되고 경제 전체의 균형에서 보면 투자와 저축이 일치하므로 Integrated Flat Tax는 그 효과면에서 소비세의 특징을 지니게 된다.

IV. Integrated Flat Tax의 개념

Integrated Flat Tax는 기업단계와 개인단계 두 단계에서 동일한 세율로 과세되고 개인단계(Individual Wage Tax)에서 누진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정액의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를 허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홀(Hall)과 라부쉬카(Rabushka)에 의하면 1993년 현재 연방개인소득세와 연방법인세수입과 동일한 조세수입을 거두기 위해서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Business Tax)와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Individual Wage Tax)의 세율은 19%로, 또한 인적공제는 부부합산 소득신고시에는 1만 6,500달러, 개인 소득 신고시에는 9,500달러 그리고 독신가장에 대해서는 1만 4,000달러의 수준에서 정해져야 한다고 한다.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Individual Wage Tax)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의 과세대상은 임금 + 연금 및 퇴직금 - 인적공제(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여 2만 5,500달러)이다.

현행 연방개인소득세와는 달리 이 체계하에서는 일정액의 인적공제를 제외하고는 각종 공제가 없다. 특히,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할부이자지급분(Mortgage Interest Payment)에 대한 소득공제가 없다는 것은 이 체계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폐지는 현재 미국의 교육기관 및 기타 공익기관에 대한 기부를 상당부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주택할부이자지급분에 대

한 소득공제의 폐지는 미국 중산층의 조세부담을 급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중산층의 주택구입은 대부분 할부금융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 항목의 폐지는 중산층의 조세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건설산업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연방 개인소득세하에서는 자본이득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는 개인 수준에서 이루어지지만 Flat Tax 체제하에서는 이러한 자본에 대한 과세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를 제외하고는 기업수준에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조세체계의 변화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되겠지만 현행 자본소득과세의 문제점인 자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자본소득의 부문별 차등과세를 방지하여 경제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행 체제하에서와 달리 한계세율이 일정하다. 이 점은 Flat Tax의 저변에 깔린 정신을 잘 나타낸다고 하겠다. 그것은 과세대상은 넓히고 한계세율은 낮추어서 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조세정책의 역사에서 이러한 정신을 찾는다면 1994년 소득세법 개정에 의한 최고 한계세율의 인하와 세율체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인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Flat Tax와 같은 형태라고 볼 수는 없으나 한계세율체계를 단순화하고 전체적인 한계세율을 낮추어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면에서는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고 본다. 또한 향후 미국 조세정책의 추이는 이러한 정신의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The Business Tax)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는 노동자의 임금과 연금소득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소득에 대한 원천과세이다. 현행 연방법인세와는 달리 이자지급액에 대한 공제가 없고 현행 법인세와 같이 배당금이나 기업의 소유자에 대한 기타 편익에 대해서도 과세한다. 따라서 현행 연방법인세와는 달리 모든 자본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또한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와 포괄해서 생각하면 모든 종류의 소득(자본소득, 노동소득)에 대해서 동일한 한계세율이 적용된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특기할만한 사실은 현행 법인소득세와는 달리 비법인 소득(의사, 변호사 또는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의 소득)도 기업소득으로 간주해서 과세하고 이자지급액에 대한 공제가 폐지되고, 기업이 피고용인에게

우리나라에서
1994년 소득세법을
최고 한계세율 인하와
세율체계를 6단계에서
4단계로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은 Flat Tax의
경제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일맥상통한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수입은 현행 미국의 기업과세인 법인세 수입에 비해 큰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수입의 순증가로 보기보다는 개인단계 조세수입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보아야 한다.

지급하는 부가급여(Fringe Benefit)도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단계에서 과세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의 수입은 현행 미국의 기업과세인 법인세의 수입에 비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는 조세수입의 순증가라기보다는 개인단계의 조세수입의 감소에 따른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현행 법인소득세 체계하에서의 복잡한 감가상각제도 대신 투자재의 구입 즉시 구입비의 100%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100% 감가상각이 허용된다. Flat Tax의 이러한 면은 복잡한 감가상각의 계산에 소요되는 자원을 절약할 수 있고 자본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왜냐하면 100% 감가상각으로써 저축을 세원(稅源)에서 제외시키고 이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그 발생시기에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과세되기 때문이다.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는 Flat Tax에 대한 여러 안들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될 수 있다. 먼저 고용자의 기여분은 다른 부가급여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에서 과세하고 피고용자의 기여분은 노동소득에 대한 과세의 수준에서 과세하여 사회보장급여에는 예외적으로 과세하지 않는다.

V. 예상효과 및 문제점

도입후 예상효과

징세비용의 절감을 들 수 있다. Flat tax 체계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조세체계의 단순화를 통해 납세자들의 조세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또한 조세행정의 효율화를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그것의 예로 소득신고 양식을 작은 우편엽서의 크기로 축소시킬 수 있을 정도로 조세체계를 단순화한다는 것이다(The Postcard Return Form). 그러나, 버논(Vernon)에 의하면 납세신고서가 단순화되었다고 해서 행정비용이 절감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납세신고 절차가 단순해진 만큼 납세자의 보다 방대한 장부정리가 필요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효율성의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과세표준의 확대에 따른 단일한 계세율의 하락은 노동공급의 증가를 가져오는 등 경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저축에 대한 비과세로 자본축적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제도는 모든 자본소득에 대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현행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의 문제점(이중과세, 투자재원의 유형에 따른 차등과세, 법인과 비법인 소득의 차등과세에서 오는 왜곡)과 자산종류별 차등적인 투자유인책(투자세액 공제의 경우 건물(Structure)에 비하여 기구(Equipment)에 편중되게 적용되고 있다) 등으로 인한 왜곡을 시정해주기 때문에 균형적인 자본축적에 도움이 된다. 또한 자본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이 현행보다 낮아지기 때문에 투자의 규모도 증대된다.

또한 현행 조세체계는 기업가의 활동(Entrepreneurship)에 저해되는 요소가 있다. 예를 들어, 이자지급금에 대한 공제는 기존 기업의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기 힘든 신규 기업인들보다는 기존 기업을 지원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Flat Tax의 도입은 신규 참여기업의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도입의 문제점

Flat Tax의 도입의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문제점은 Flat Tax제도 자체의 문제점과 현행 제도에서 이 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문제점으로 대별된다. 먼저 Flat Tax의 이행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Flat Tax의 이행에 따른 문제점

먼저 기존 자본에 대한 감가상각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신규투자의 경우는 100% 즉시 감가상각을 시행할 수 있는 반면, 기존에 투자된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이 미처 허용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임시로 신규 투자와 분리해서 기존 자본에 대한 감가상각은 현행 제도대로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추가적인 재원은 한계세율의 소폭인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Flat Tax의 중요한 일면은 이자지급액을 소득공제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다. 이 경우 조세부담이 이자소득자로부터 기업의 소유자로 전가된다. 따라서 기존 기업의 부채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제도와 같이 이자지급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하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는 반면 신규 부채에 대해서는 Flat Tax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구분

Flat Tax의 도입은 한계세율 하락에 의한 노동공급의 증가, 자본축적 및 자본소득의 부문별 차등과세의 폐지에 따른 효율성 향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택할부이자지급분에 이 용이하지 않다.

대한 소득공제의 폐지는

중산층 주택소유자 제도 자체의 문제점

대부분이 할부금융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미국의 현 상황에 비추어

보아 중산층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야기한다.

Flat Tax 제도 자체의 문제점은 다음 몇 가지로 대별된다. 먼저 중산층의 세 부담을 증가시키고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여 세 부담의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현행의 누진체계를 단일세율로 전환할 경우 인적공제액이 저소득층 소득액보다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세 부담은 이전과 별로 달라질 가능성이 없다. 그러나 중산층의 경우 이전보다 한계세율이 높아지고 고소득층의 경우 이전보다 한계세율이 낮아지며 각종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폐지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현행보다 역진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주택할부이자지급분(Mortgage Interest Payment)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됨에 따라 주택소유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중산층의 주택소유자의 대부분이 할부금융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중산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을 지니게 된다. 또한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의 폐지로 교육기관 및 기타 공익기관에 대한 기부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의 자동안정화에 역행

Flat Tax 도입의 또 다른 문제점은 이 제도의 시행은 경기의 자동 안정화에 역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의 누진세제의 장점 가운데 하나는 경기의 자동 안정화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Flat Tax 체제하에서는 기업의 투자가 증가하는 경기상승국면에는 기업의 조세부담이 줄어들고 기업의 투자가 줄어드는 경기하강국면에서는 기업의 조세부담이 증가한다. 이는 투자에 대해서는 100%가 즉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의 과세소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에 대한 100% 즉시 공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조세를 납부하는 것보다는 투자재 구입을 선호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자본소득을 투자로 처리하여 극단적인 경우 기업수준의 납부세액이 0(零)이 될 가능성이 있다.

자원배분의 왜곡 가능성

그리고 Flat Tax는 또 다른 형태의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이 조세체계하에서는 투자재의 구입이 많은 자본집약적인 산업은 투자에

대한 공제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누리기 때문에 조세부담이 낮은 반면 그렇지 못한 서비스 산업의 조세부담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현행 조세체제와는 또 다른 부문별 차등과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공평성에 역점을 두어온 미국의 조세정책이 최근들어 이의 부작용에 대한 반성과 함께 효율성 제고측면으로의 방향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VI. 결론 및 시사점

Flat Tax 제도는 현행 미국의 조세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점 즉 복잡한 조세체계를 개선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고안된 야심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이 조세체계가 지닌 문제점과 이 제도로 이행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그 시행은 당장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초에 뜨거웠던 이 조세제도에 대한 논쟁은 현재 한풀 꺾인 상태이므로 더욱 그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의 바탕에 깔린 기본정신이 과세대상을 넓히고 한계세율을 낮추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조세정책의 추이를 살펴보면 이념으로 공평성과 효율성이 번갈아 가면서 강조되었다. 미국은 오랫동안 소득재분배를 강조하는 정책, 특히 소수민족과 저소득층에 대한 평등화 정책이 강조되어 왔으나 최근에 와서는 이들 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반성이 여러 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Flat Tax라는 조세체계가 최근에 와서 강조되는 것은 효율성 제고를 그 기본정신으로 하는 조세개혁이 가까운 장래에 미국에서 논의될 것임을 시사한다.

우리에게 주는 정책시사점

그러면 이 제도를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시키면 어떠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는지도 생각해 봄직하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난 1994년의 소득세법 개정의 정신은 이 제도의 이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금년부터 시행되는 그 제도로 인해 일부 계층의 소득세 부담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종류의 소득세법 개정을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는 일이라 할 것이다.

한국의 조세제도 및 그 경제적 효과를 논의할 때 그 수준이 학술적인 의미에서든 정책입안 과정에서든 형평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미국에서 지나친 평등화 정책의 문제점이 여러 각도에서 제기되는 것을 볼 때 Flat Tax는 여러모로 향후 한국의 조세정책의 기본방향 설정에 큰 시사점을 던져 준다고 하겠다.

필자의 솔직한 느낌이다. 이는 조세정책의 효과분석에서 그 정책의 효율성 평가를 위한 실증분석의 틀이 현재 한국에서 확고히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소재를 찾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조세정책을 보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효율성과 공평성은 양자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가 없는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나치게 공평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고 최근 미국에서 지나친 평등화 정책의 문제점이 여러 각도에서 제기되는 것을 볼 때 Flat Tax는 여러모로 향후 한국의 조세정책의 기본 방향 설정에 큰 시사점을 던져 준다고 하겠다. KCP

『재정포럼』 정기구독 안내

국내 유일의 재정정책 전문지
『재정포럼』과 함께 하십시오.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겠습니다.

- 정기구독 신청 : 137-130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60
한국조세연구원 출판팀
전화 (02) 3460-2131~2
팩스 (02) 578-9385
- 연간 구독료 : 3만원

토지초과이득세의 쟁점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I. 토지초과이득세의 현황

토초세제의 개요

토지초과이득세는 개발부담금과 함께 개발이익 환수장치로 구상되어 토지공 개념 입법을 통해 1990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유희지에 평균 이상의 지가상승이 있을 경우, 이를 투기적 토지보유로 보아 미실현 자본이득을 중과하는 세제이다.

1991년과 1992년의 2차례 예정과세와 1993년의 제1기(1990~1992년) 정기과세 후, 지가급등에 따른 부과지역을 지정하지 않아 제2기(1993~1995년) 정기과세는 없는 것으로 발표되었다.

앞으로 토초세의 부과여부는 건설교통부가 조사·발표하는 전국평균지가변동률의 정도에 달렸으며, 지가안정기에는 정기과세의 경우에도 전국 단위가 아닌 국세청이 지가급등(우려)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의 유희지에 한해 국지

토지초과이득세는 유희지가 정상지가 상승률을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투기적 토지보유로 보아 미실현 자본이득을 중과하기 위하여 1990년에 도입되었다.

정부는 헌재(憲裁)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투기가 재연될 경우의 대안 미비와 토초세 폐지시 일어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초세를 보완·존속시키기로 했다.

적으로 부과하게 된다.

헌재(憲裁)의 헌법불합치 판결과 정부의 보완·존속 정책결정

1993년 7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토초세 헌법불합치 판정시 미실현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해석으로 토초세의 존속 가능성이 열렸고, 정부는 헌재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토초세를 보완하여 존속시키기로 정책방향을 정하였다.

토초세를 보완·존속시키기로 단시일 내에 정책방향을 결정한 것은 투기가 재연될 경우의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토초세의 폐지시 일어날 혼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였다.

이에 따라 1994년 12월에 발표된 토초세 보완조치는, 기본골격은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헌재가 지적한 문제점들을 항목별로 교정하는 방식의 법령개정작업이었다(〈표 1〉 참조).

〈표 1〉 토초세제 보완사항

	헌재 지적사항	보완조치
과세표준	1. 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성 문제 2. 과표산정 기준의 시행령 포괄위임 (조세법률주의 위반)	- 표준지수 확대(30만→45만) - 지가산정 근거의 법률내 명문화
세율	3. 높은 단일 비례세율(50%) 4.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와 지가등락에 따른 원본잠식 가능성	- 2단계 누진세율체제로 전환 • 1,000만원 초과 과표 50% • 1,000만원 미만 과표 30% - 토초세와 양도세간 상계장치를 양도시 정산체제로 보강함 • 과세후 3년내 양도시 100% 공제 • 과세후 6년내 양도시 60% 공제
과세대상	5. 유희지의 과세대상 범위 문제 (임대용토지 과세기준·범위 제한 필요) (무주택자 소유택지에 대한 택지소유상한법과의 부조화)	- 유희토지판정 기준완화 • 건물신축부지: 과세유예기간 연장 (1년→3년) • 임대용 토지: 건축물 부속토지 기준면적 적용, 법인소유농지 수입금액기준 완화 • 무주택자소유 나대지: 가구당 1필지에 한해 200평까지로 과세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무주택자의 필지 선택권 인정 • 법령상 사용제한 과세제의 및 취득일 조정
과세조건	6. 보유기간중 지가하락 보완규정 미비문제	정기과세시에도 지가안정시 전국적 집행중지 가능한 국세청 재량권 부여

토초세법 개정시 제1차 정과세분(1990~1992년)에 대해 불복절차를 밟고 있는 자에 대한 신·구법 적용의 경과규정 미비로 소송진행이 중단되었다가 불복자에게만 개정된 신법을 적용한다는 1995년 7월의 토초세 관련 제2차 헌재판결로 기납부자와 불복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나대지에 대한 토초세부과는 조기개발과 저밀도개발을 강제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왜곡하고 토지조세의 중립성에 악영향을 미쳤다.

II. 토지초과이득세의 문제점

토초세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토초세의 궁극적인 목적은 투기적 동기에 의한 토지보유를 억제하기 위하여 증과하는 것인데, 투기적 보유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편협한 부과대상토지에 대해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

과세지역이 전국이었던 1993년의 제1기(1990~1992년) 정과세에서, 과세대상토지가 전국 민유지 중 0.2%의 면적과 0.5%의 필지를 소유한 9만 4,147명(0.8%의 토지소유자)에 대해 부과되었으며, 지역적으로는 서울·경기지역에 소재한 60%의 필지가 전체의 77%를 납부하여 수도권 미개발지에 집중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대상은 유희지이었지만 부과요건은 정상지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지가가 상승한 토지에만 부과됨으로써, 토지취득과 그후의 토지이용 실태로 투기성 여부를 판별하지 않고 소유자의 통제범위 밖에 있으면서 사후적(ex-post)으로 이루어진 지가상승 정도에도 부과여부가 영향을 받아 투기적 보유동기를 판별하는 기준으로는 부적절하였다.

둘째, 가건물 신축 등의 적극적인 행동에 의하여 비유희지로 판정받거나, 유희지상태로 방임하고도 지가상승이 기준치(정상지가상승률)에 미달하면 과세되지 않음으로써,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이상의 2가지 부과요건을 피하도록 토지이용 및 행태변화를 강제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대도시주변의 미개발토지는 각각 적정 개발시점이 존재하는데, 나대지에 대한 토초세 부과는 조기 개발과 저밀도개발을 강제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왜곡하고 토지조세의 중립성에 악영향을 미쳤다.

셋째, 부과액산정에 기초가 되는 정상지가상승률 및 초과지가상승 이익판정에 대한 임의성, 부과여부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불가능성, 납세를 위한 유동성(liquidity) 확보와 같은 조세법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1991년 2/4분기부터의
 지가상승률 둔화와
 1992년 2/4분기부터의
 지가하락으로 토초세의
 지가 안정 효과를
 추측할 수 있으나
 보유과세 강화가
 지가상승률이 아닌
 지가수준을 낮춘다는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지가의 주기적
 변동결과일 수 있다.

넷째, 부과대상토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부상의 지목이 아닌 실제 이용상태를 시점별로 파악해야 하는 사실판단 문제가 세무행정에 큰 부담을 주어 행정 비용이 높았다.

III. 토지초과이득세의 지가(地價)안정 효과

이상에서 언급한 토초세의 조세법적, 경제적 제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토초세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국의 지가를 안정시켰다는 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러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과는 별개로 평가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토지초과이득세가 전반적인 지가 안정에 기여한 효과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실증적 차원에서는 학계에서 별로 행하여지지 않아 검증되지 않았지만 단지 다음과 같은 추론을 통해 그 효과가 미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토초세는 나대지(40.8%)·농지(31.2%)·임야(18.4%)로 이용되는 토지 가운데 지가가 급등한 토지에 국한하여 부과되었고, 전국단위의 지가 또는 지가변동을 조사시에 사용되는 이들 용도의 토지가 차지하는 가중치(토지가액기준)는 낮으므로, 부과된 토초세가 조세의 자본화과정(capitalization of taxation)을 거쳐 전국지가를 하락시킨 부분은 크지 않다고 생각된다.

둘째, 1991년 2/4분기부터의 지가상승률 둔화와 1992년 2/4분기부터의 지가하락은 각기 1990년과 1991년 귀속분에 대한 예정과세기간인 1991년 하반기와 1992년 하반기 직전에 이루어져 상호인과관계성(causality)을 짐작하게 하지만, 보유과세의 강화가 지가상승률이 아닌 지가수준을 바로 낮춘다는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지가의 주기적 변동결과일 수 있다.

IV. 주변여건 변화

전국에 걸친 지가급등 가능성은 금융·부동산실명제 실시, 토지종합전산망을 통한 감시기능 확대, 그리고 1997년부터의 등기전 거래신고제의 도입 등으로 과거에 비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토지시장은 위치 고정성 및 공급 불증성으로 인해 지역적 특성이 강하

므로 전국의 지가는 안정되더라도 국지적인 토지시장으로부터의 자본이득 가능성은 용도전환 및 개발사업 시행으로 항상 존재하므로, 토지거래에서 발생하여 실현된 지가차익은 양도소득세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환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1994년 토초세 헌법불합치 판결시 투기 재연시의 정책수단 미비에 따른 우려는 어느 정도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지가는 안정되더라도 국지적인 지가 급등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므로 토지거래시 발생한 지가차익은 양도소득세를 통해 환수되어야 한다.

V. 토지초과이득세의 향후 개편방향

토초세의 한시적 존치와 추가적인 보완 방안

토초세는 중앙정부가 토지정책수단 가운데 하나인 국세로서의 토지보유세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지가급등시에도 과세당국은 그 동안의 시행경험상 과세대상 범위를 축소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납세자도 강한 납세불복 현상을 보일 것이므로 그다지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토초세의 한시적 존치론은 전국적인 지가안정 도래기 또는 지방토지보유세인 종합토지세가 과표현실화를 통해 강화될 때까지를 시한으로 삼는 견해가 지배적인데, 보유과세강화계획이 원래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토초세에 대한 정책당국의 과신과 이에 따른 존치라는 시각이 있다.

앞으로의 신규 부과를 위해서는 현행의 토초세제 가운데 양도세와의 상계장치(相計裝置)를 기간구분 없이 100% 공제하거나 이자보상액까지 포함하도록 보완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후술하는 양도소득세로의 흡수방안에 의해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기납부자에 대한 공평성 문제를 매도시점에서의 양도세와 정산할 때까지 연기할 수 있어서 세무행정상의 편의는 추구할 수 있으나, 부과 후 3년이 지난 뒤에 매각하여 부분(60%)공제되는 기납부자에 대한 불공평성 문제와 현재 불복중인 2,000여건의 소송에 대한 세수손실 문제가 있다.

토초세 폐지후 관련 토지세제 보완 방안

미실현자본이득에 대한 보유단계과세인 토초세를 자본이득세적 특성과 보유과세적 특성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에서 분리하여 흡수할 수

토지초과이득세를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고려해 볼 수 있다.

자본이득세적 특성과

보유과세적 특성을

감안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토지세에서 분리하여

흡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문제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① 종합토지세로의 흡수방안

지가상승 정도와는 연계시키지 않고 토초세 과세대상 용도의 유희토지를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 유형으로 분류하여 고율분리과세(예: 5%)하는 방법이 있다. 이것은 나대지 상태로의 보유를 억제하고 이용을 강제하는 효과는 유지하면서, 지가상승 정도에 따라 과세여부가 임의적으로 정해지는 문제점을 없애며 자본이득은 실현된 후 양도소득세에서 환수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현행 종합토지세가 이미 토지이용 상황에 따라 과세대상을 분류하여 차등과세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나, 토지대장 및 전산입력된 종토세과세 전산대장 중 현재 이용상황에 대한 정비를 필요로 하고 국세 세목의 폐지 후 지방세 세목인 종합토지세로 중앙정부의 토지조세정책을 수행한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② 양도소득세로의 흡수방안

기존의 실현주의 자본이득과세인 양도소득세제 내에, 과세대상범위를 초과 지가상승 유희지에 한정하지 않고 토초세의 기본요소인 미실현자본이득과세를 보편화하는 방안이 있다.

이 방안은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개별 공시지가를 통해 발생하였다고 추정되는 지가상승분에 대해 보유단계에서 일정기간(예: 3년)마다 양도세 예납적 성격으로 과세한 후 추후 납부하는 양도세와 정산하는 방식으로 양도세의 동결 효과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과세대상을 정상지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상승하는 유희지에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과세베이스의 편협성 및 불공평성 문제를 줄일 수는 있으나, 모든 토지소유자에 대해 미실현자본이득과세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세무행정문제, 조세저항문제, 그리고 납세를 위한 유동성 부족문제(liquidity problem)를 악화시킬 수 있다.

토초세 폐지시에 고려하여야 할 사항

토초세 세수 중 50%는 지방양여금을 통해 지방정부에, 나머지 50%는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계(土特)」에 귀속되는데, 1994년 이후의 신규

부과가 없었으므로 토초세 폐지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와 토특재원 감소는 이미 조정이 이루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다.

토초세 폐지의 의미는 토초세법에 의한 신규 부과가 없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납부세액의 환급문제를 수반하는데 이는 차기 양도시 기납부 토초세액에 이자를 합산하여 양도세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정조세의 한계를 인정하여 토초세를 폐지하고 투기활동 방지는 부동산 관련 주변제도로, 토지이용의 효율화는 토지보유세를 통한 세부담 증가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VI. 결론

투기는 자산가격이 급상승하는 과정중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특정 조세로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토초세는 폐지하고 투기활동 방지는 부동산관련 주변제도로, 토지이용의 효율화는 토지보유세를 통한 세부담 증가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국지적인 지가상승이 아닌 전국적 지가급등 가능성은 향후 통화량 등의 거시경제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전제할 경우 그다지 높지 않으며, 토초세의 투기억제기능은 진술한 부동산실명제와 토지종합전산망 등의 주변제도와 종합토지세의 보완으로 대체되어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시장을 단기적으로 위축시키는 과거의 투기억제대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지가상승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과잉통화량 공급 및 용도별 토지배분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영과 토지이용규제의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KDI

1996년 하반기 경제운영관련 주요 정책과제

-1996~97년 경제전망 및 주요 정책과제

김종만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종규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무역 및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으나 설비투자 증가율의 둔화로 인한 수입의 감소 등으로 금년도의 실질 GNP는 6.8%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I. 최근 거시경제 동향 및 전망

최근 거시경제는 연착륙(軟着陸)의 과정을 밟고 있으며 재고 증가율이 높은 가운데 설비투자 증가율의 장기적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원자재 가격과 공공요금 등에 있어서 향후 물가불안 요인이 예상되거나 소비자의 인플레 기대심리는 금년들어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분석되었다.

무역 및 경상수지의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으나 설비투자 증가율의 둔화로 인하여 자본재를 중심으로 수입이 감소함으로써 경기 연착륙에 따라 금년 하반기부터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 1/4분기중 GNP 기준 실질 성장률은 7.4%로 잠정 집계되었다.

실질 GNP는 금년중 6.8%, 내년중 6.5% 내외 정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실질 잠재(潛在) GNP 성장률은 각각 7.8%, 7.1%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망치를 근거로 [그림 1]에서와 같이 GNP 갭을 계산해 보면 금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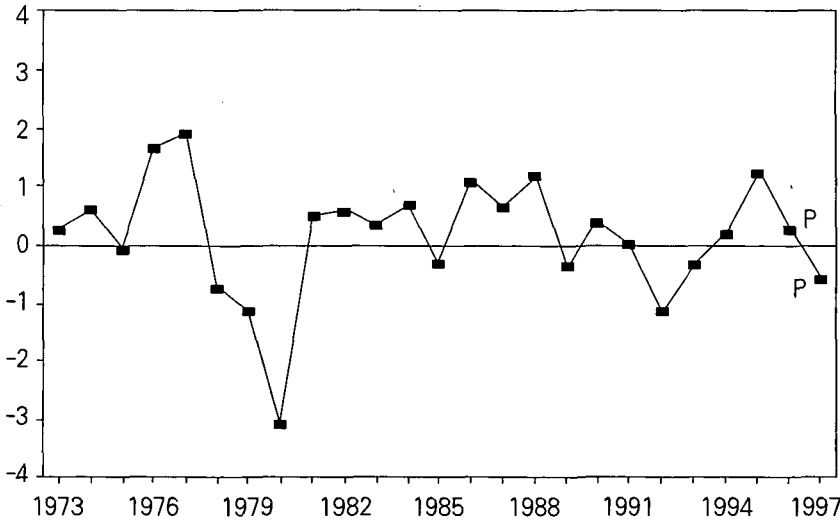
의 경우는 실제 생산액이 잠재적 생산액에 접근하고 있는 연착륙으로 평가되
지만 내년의 경우는 실제 생산액이 잠재적 생산액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보인다.

금년중에는 실물시장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내년중에는 전망치보다 총수요가 다소 확대되어도 물가에 미치는 부담이 상대
적으로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 소비자물가는 금년중 4.5% 내외 상승할 것이나 내년중에는 3%대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소비자물가는
금년중 4.5% 내외
상승할 것이나 내년중에는
3%대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GNP 갭의 추이 : 1973~1997년



주 : GNP 갭은 $\{(GNP-잠재GNP)/GNP\} \times 100$ 이며 1996년과 1997년은 전망치임.
GNP 갭이 (+)이면 경기과열, (-)이면 경기불황을 나타냄.

최근 거시경제 동향

① 실질 설비투자 증가율의 장기추세 추정 결과

실질 설비투자의 전년동기대비(前年同期對比) 증가율은 1995년 4/4분기의
1.48%에 이어 1996년 1/4분기에도 4.5%로 낮은 증가율이 지속되었다.

이와 같은 설비투자 증가율의 둔화는 일시적 변동에 의한 현상이 아니라 장
기추세가 하락하였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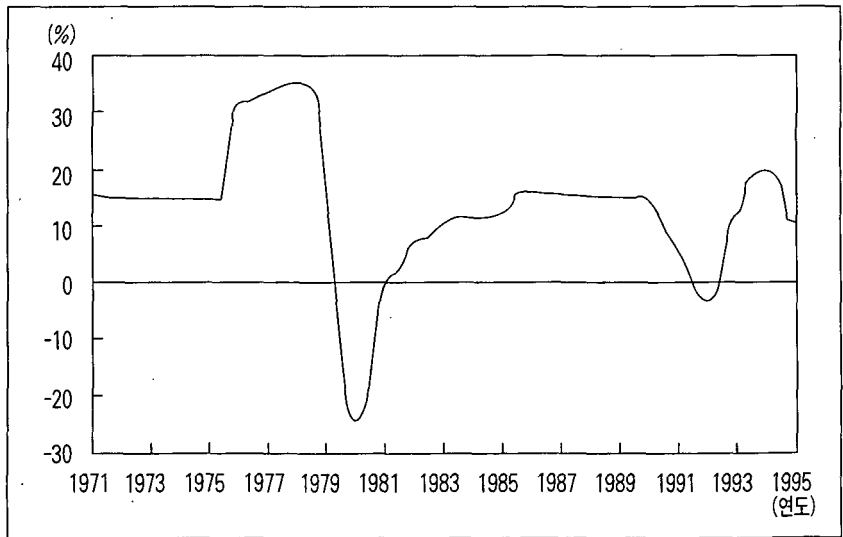
설비투자 증가율의 둔화는 장기적인 추세로 보이며 경제여건의 변화가 없는한 20% 내외의 높은 증가율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설비투자의 '장기적' 증가율은 작년 3/4분기 이후 큰 폭으로 줄어들기 시작하여 3저(低)가 시작되기 직전(1984년 하반기~1986년 상반기)의 설비투자 증가율과 대체로 비슷한 연 10% 정도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992~1993년의 경우처럼 설비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장기적' 증가율상의 변화는 '특별한 국내외적 경제여건의 변화가 없는한' 향후에 1995년 3/4분기까지와 같은 높은 증가율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2) 실질 설비투자 증가율의 장기추세 추정결과



- 주 : 1. 연율화(年率化)된 수치임.
- 2. 실질설비투자를 계절조정된 뒤 전분기 대비 증가율 중 일시적 변동분을 제거한 장기적 추세를 추정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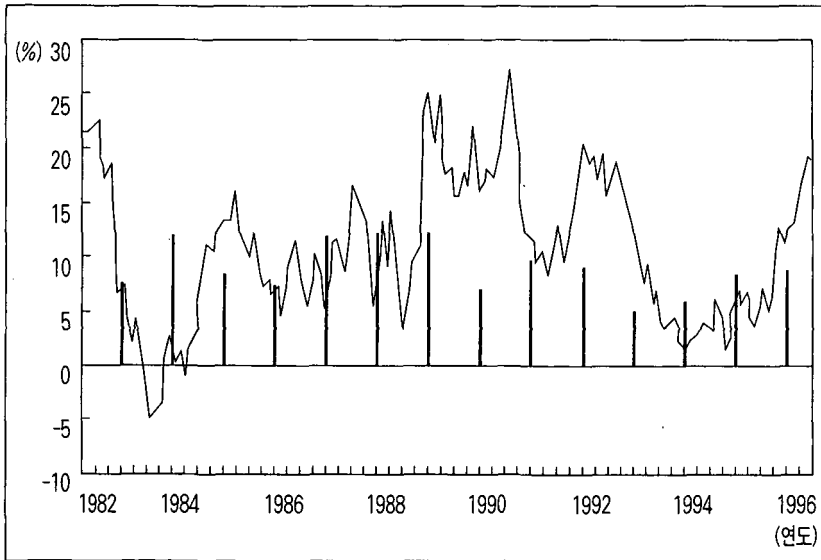
② 제조업 재고(在庫) 증가율 추이

[그림 3]은 1982년에서 1995년까지의 실질 GNP의 연간 성장률과 제조업 재고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을 함께 나타낸 것이며 재고 증가율이 높아지면 실질성장률이 하락하는 뚜렷한 패턴을 볼 수 있다.

1996년 1/4분기중의 전년 동기비 재고 증가율은 19.1%로서 불황이 시작되었던 1992년 중반의 수치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난다. 최근의 이러한 재고증가의 원인은 대부분 중화학 제품의 재고증가에 기인하고 있다.

높은 재고증가로 향후의 수요증가가 곧 설비투자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며, 이러한 설비투자의 장기 둔화는 전체 경기의 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 3) 월별 제조업 재고증가율 및 연간 실질 GNP 성장률
(1982년 1월~1996년 3월)



주 : 연간 GNP 성장률은 해당연도 끝 부분에 그려져 있음.

이러한 높은 재고증가율은 향후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그것이 곧 투자증가로 이어지기 어려움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앞서 살펴본 실질 설비투자 증가율의 장기추세상 둔화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전체 경기(景氣)도 한동안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③ 산업활동동향 및 국제수지 실적 분석

설비투자 관련지표인 국내기계수주의 경우 1993년 4/4분기~1995년 2/4분기까지의 기간중 예외없이 20% 이상 증가하다가 1995년 3/4분기부터 급감하고 있다.

기계류 수입허가의 경우도 1993년 3/4분기~1995년 2/4분기까지의 기간

수출 및 설비투자의 증가는 자본재·원자재 수입의 증가로 이어져 무역적자 확대의 원인임을 감안할 때 최근의 투자둔화는 수입증가 둔화를 의미한다.

중 모두 20% 이상씩, 특히 1994년 1/4분기~1995년 2/4분기까지는 모두 50% 이상씩 증가하다가 1995년 3/4분기부터 역시 급감하고 있으며 기계류 수입액과 설비용기계류 내수출하도 1995년 4/4분기부터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설비투자 관련지표 증가율 추이

(단위: %)

	1993		1994				1995				1996	
	Ⅲ	Ⅳ	Ⅰ	Ⅱ	Ⅲ	Ⅳ	Ⅰ	Ⅱ	Ⅲ	Ⅳ	Ⅰ	4월
국내기계수주	6.7	29.6	32.0	23.0	32.2	22.2	45.4	26.6	0.9	-1.5	9.7	11.7
기계류 수입허가	27.2	20.3	51.5	68.9	81.2	87.4	59.4	79.8	1.7	-7.2	1.3	-41.6
기계류 수입액	3.1	31.4	33.5	29.2	42.0	44.5	47.1	34.8	22.9	10.8	16.0	24.7
설비용기계류 내수출하	7.7	22.1	29.0	20.2	18.7	21.4	28.3	30.0	22.1	8.0	9.0	4.4

주: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상 수출 및 투자가 활발할수록 그에 따라 자본재·원자재 수입이 늘었던 것이 1994~1995년 기간중 무역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감안하면 최근의 투자둔화는 향후 자본재·원자재를 중심으로 한 수입증가의 둔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1995년중 농산물을 비롯한 주요 원자재의 국제가격이 급등하였기 때문에 식량 및 에너지 제품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기간중 높은 수출 증가율을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되었다. WEFA나 DRI 등 주요 예측기관들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머지않아 안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또한 이라크가 원유수출을 재개함에 따라 국제유가도 하락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입금액의 증가율은 하반기부터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 주력 수출상품의 국제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전체 수출금액이 감소하고 그만큼 무역수지 또한 단기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나 최근의 설비투자

의 둔화가 장기적 현상임을 감안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자본재·원자재를 중심으로 수입 증가율이 하락하고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내수둔화로 인한 무역수지의 호전은 자본수지 흑자에 따른 종합수지 흑자폭이 확대되어 경제운용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것이다..

1996~1997년 경제전망

금년 및 내년도의 자본유입 규모가 각각 160억달러, 총통화 말월 평잔 증가율을 14%로 유지하는 등의 가정을 하였을 때 1996~1997년간 주요거시 변수 전망치는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거시경제지표 전망

(단위 : 억달러, %)

	잠재GNP 성장률	실 질 GNP	소비자 물 가	생산자 물 가	명 목 금 리	상 품 수 출
1996	7.8	6.85	4.7	1.9	10.5	18.3
1997	7.5	6.60	3.6	1.2	8.8	12.2
	상 품 수 입	무 역 수 지	경 상 수 지	전 산업 임 금	제 조업 임 금	실 업률
1996	16.2	-38	-95	11.6	12.2	1.87
1997	10.5	-10	-62	10.9	9.8	1.92

주 : 1. 상품수출 및 상품수입은 국제수지기준 달러 표시 금액의 증가율임.
2. 명목금리는 회사채 수익률임.

금년도 실질 GNP 성장률은 하반기 들어 둔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3/4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및 생산자물가는 하반기에 보다 안정되고 명목금리(名目金利)는 기간중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년도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는 2/4분기중에는 1/4분기보다 다소 악화될 전망이나 하반기 들어 개선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망에서처럼 내수둔화로 인해 무역수지가 호전될 경우 이는 자본수지 흑자에 따른 종합수지 흑자폭 확대에 의하여 경제운용에 오히려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1993년 말~1995년 말까지는 경기가 호황국면에 있었으나 현재는 연착륙의 과정에 있다는 점을 상기할 때 자본유입에 대한 대책방향도 당시와는 달라

환율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가중치로 하여 평가한 결과 1995년 3/4분기중 원화의 가치는 1985년

평균수준에 비하여 약 3%가 저평가되었다.

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경기호황에 따른 시설재 중심의 수입수요의 증가로 인하여 무역수지에서 적자가 났었기 때문에 자본유입을 상당부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전망에서와 같이 무역적자가 개선된다면 자본 유입은 그만큼 종합수지 흑자로 이어져 국내 통화관리에 보다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통화량 증가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이는 대외 순자산을 증가시킴으로써 민간대출을 위한 여력을 감소시키게 되므로 설비투자 및 수출 등의 거시변수에 대해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처럼 경기 사이클을 감안하여 내년까지의 국제수지를 전망할 때, 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국제수지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II. 환율·통화·재정 정책조합 운용방향

현 환율수준의 적정성 평가

원/달러 명목환율과 실질환율 및 각 실효환율 등이 달러화로 표시된 우리나라의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할 때, 현재 국내통화의 가치는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고평가(高評價)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실증분석의 결과 우리나라 수출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환율은 원/달러 명목환율인 것으로 파악되었다(김종만, 『환율운용과 수출경쟁력』, 1994 참조). 이는 우리나라 수출대금이 대부분(1994년의 경우 약 88%) 달러화로 결제되기 때문이다.

원/달러 명목환율 이외에도 명목실효환율과 단위당 노무비(勞務費) 기준 실질실효환율과 달러화를 제외한 주요 수출대상국 통화에 대한 명목실효환율 등도 수출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각 환율이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수출가격의 변동요인을 설명하는 회귀분석에서 추정된 계수의 절대값)를 가중치로 하여 평가한 결과 1995년 3/4분기중 원화의 가치는 1985년 평균수준에 비하여 약 3% 저평가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1985년에는 거의 균형을 이루었고 1986년부터는 흑자로 돌아선 점을 감안할 때 1985년중 원화의 가치가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고평가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95년 3/4분기중 원화의 가치는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고평가된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현재의 원화의 가치는 1995년 3/4분기에 비해 1.8% 정도 상승한 것으로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고평가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표 3〉 달러표시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한 1995년 3/4분기 환율평가

(1985=100)

	수출가격에 대한 영향	가중치 (A)	환율지수 (B)	적수(積數) (A×B)	환율수준 평가지수
원/달러 명목환율	0.3882	0.5103	89.17	45.50	104.14
명목실효환율	0.3725	0.4897	119.74	58.64	
원/달러 명목환율	0.4127	0.6168	89.17	55.00	85.28
단위노무비 실질실효환율	0.3564	0.3832	79.01	30.28	
원/달러 명목환율	0.4831	0.6699	89.17	59.73	119.02
달러제의 명목실효환율	0.2380	0.3301	179.61	59.29	
평 균					102.81

주 : 1. 수출가격에 대한 영향은 달러표시.

2. 우리나라 수출가격의 변동요인을 추정한 결과 각 환율의 영향을 표시하는 계수 추정치의 절대값임.

엔/달러 환율은 1995년 3/4분기 1달러당 평균 97.8엔에서 현재(5월 20일) 106.8엔으로 약 13.5% 상승하였다. 이로 인하여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평가한 환율지수의 하락(원화 가치 상승)요인은 약 1.4%인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하여 원/달러 명목환율은 같은 기간 1달러당 평균 765.8원에서 779.5원으로 약 1.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출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평가한 원화의 현재 가치는 1995년 3/4분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며 따라서 현재 원화의 가치는 수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고평가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자본수지 흑자에서 **해외자본의 유입과 환율운동**

경상수지 적자를 제외한

외환의 초과공급을 중앙은행이 매입하여 흡수하지 않을 경우 국내 통화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1996년 경상수지의 적자규모가 당초 예상보다 20억달러 증가한 90억달러에 달하고 해외자본의 순수입 규모도 같은 폭만큼 증가하여 16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결과 종합수지 흑자 70억달러로 인한 외환의 초과공급을 중앙은행이 전액 매입하여 흡수할 경우 연말의 원/달러 환율은 1달러당 약 768원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6년 들어 반도체 가격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수출이 예상보다 부진하여 5월 20일까지 통관기준 무역수지가 87억 6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연간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당초 전망치 70억달러 내외에서 90억달러 내외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의 조기(早期) 확대, 해외자본 도입과 관련된 규제의 완화 등으로 해외자본의 순수입 규모는 당초 전망치 140억달러 내외에서 160억달러 내외로 증가할 전망이다.

현재 원화표시 예금에 대한 금리에 비하여 외화표시 예금에 대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외환의 보유 및 거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민간의 보유를 위한 외환수요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자본수지 흑자에서 경상수지 적자를 제외한 외환의 초과공급을 중앙은행이 매입하여 흡수하지 않을 경우 계속 국내통화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종합수지 흑자 전액을 중앙은행이 수동적으로 매입하여 흡수하고 그 외에는 환율을 조정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자본수지 흑자와 경상수지 적자 및 중앙은행 외환매입의 효과를 종합할 때 연말까지 원/달러 환율은 현재보다 약 1.4% 하락한 1달러당 768원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추산되었다.

원/달러 환율이 이와 같이 하락하더라도 J곡선효과로 인하여 1996년중 수출금액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로 인한 수출금액의 감소효과는 1997년부터 나타나게 되어 같은 해 수출금액이 약 0.6% 감소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뒤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엔/달러 환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원화 가치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 상당히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1996년 외환수급 및 원/달러 환율 전망

	경상수지	자본수지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환율변동 효과 계(%)
외환수급(억달러)	-90	+160	+70	
원/달러 환율 변동효과(%)	+3.63	-5.51	+0.52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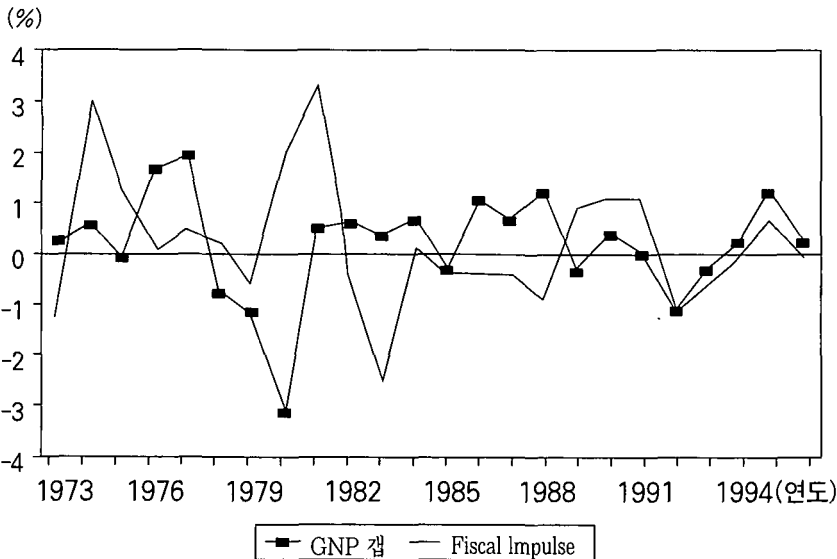
금년중에는 호황도
불황도 아닌 연착륙이
예상되므로 재정운영 또한
경기중립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년도 재정운영 방향

〈표 2〉에서 제시된 전망치를 근거로 재정기조(財政基調)를 판단하는 지표인 재정팽창지수(fiscal impulse measure)를 산출해 보면 금년도 예산기준 통합 재정수지는 경기중립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금년중에는 잠재 생산액과 실제 생산액이 거의 일치하는, 호황도 불황도 아닌 연착륙이 예상되므로 재정운영 또한 경기중립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4) GNP 갭과 재정팽창지수(FI)



주 : GNP 갭이 (+)이면 경기과열, (-)이면 불황임을, F지수가 (+)이면 팽창기조, (-)이면 긴축기조를 나타냄. 1996년의 값은 전망치임.

1996년 4월 중앙은행이
2조 7,400억원의
통안증권 추가발행으로
4월 말 현재 통안증권
발행 총액은
29조 1천억원이 되어

1995년 말보다
3조 3천억원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하반기 들어 종합수지 흑자로 인해 통화증발 압력이 가중되는 경우 정부보유 주식 매각을 통해 세외수입을 증가시킴으로써 다소의 통화환수 효과를 도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통화관리 및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

지준율(支準率) 인하 및 해외자본 유입으로 인한 통화증가 등으로 통화의 안정적인 관리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안채(通安債) 발행잔액이 급증하여 이에 대한 이자지급으로 중앙은행의 수지가 악화되고 자동적인 통화팽창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6년 4월 23일부터 예금에 대한 지급준비율을 평균 19% 인하함에 따라 방출되는 자금을 흡수하기 위하여 중앙은행은 2조 7,400억원의 통안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였다. 그 결과 1996년 4월 말 현재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1995년 말 25조 8천억원에서 29조 1천억원으로 3조 3천억원이 증가하였다.

지준율이 인하됨에 따라 은행들에 의한 예금창조의 배율(통화승수)이 높아지기 때문에 지급준비금 방출분을 통안증권을 발행하여 흡수하더라도 본원통화 증가율을 종전과 같이 유지할 경우 장기적으로 총통화(M2) 증가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표 5〉 예금별 지급준비율 조정

(단위: 10억원, %)

	1995년 12월 하반기 평균	전체예금액에 대한 비중	지준율 조정			실효인하율
			종전	조정후	인하율	
요구불예금 및 2년 이하 만기 정기예금, 정기적금	91,765.2	65.4	11.5	9.0	21.7	14.2
2년 이상 만기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	27,248.6	19.4	8.0	6.0	25.0	4.9
기타 저축성예금	21,338.9	15.2	3.0	3.0	0.0	0.0
계	140,352.7	100.0	-	-	-	19.1

주 : 실효인하율은 각 예금항목별 인하율에 예금의 비중을 곱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 한국은행 자금부 및 『조사통계월보』.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으로 인한 외환의 초과공급이 국내통화에 미치는 지속적인 상승압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경상수지 적자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매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해외부문의 통화증가 요인이 5조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996년 종합수지 흑자 예상액 70억달러를 전액 중앙은행이 매입하여 흡수할 경우 해외부문의 통화증가 요인은 약 5조 4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연간 총통화 증가율을 14%(12~16%의 중간)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하여 본원통화 증가율도 14%로 유지할 경우 본원통화 증가 허용액은 약 3조 7천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1조 8,500억원은 국내부문의 통화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공급하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해외부문과 국내부문의 통화증가 요인 합계액은 약 7조 2,500억원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원통화 증가요인 합계액에서 증가허용액을 공제한 필요 환수액은 약 3조 5천억원에 달하게 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해외부문에서 증가하는 본원통화를 흡수하기 위해 통안증권을 발행할 경우 1996년 말 통안채 발행 잔액은 35조 3천억원에 달하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해 통화팽창의 우려가 있다.

〈표 6〉 본원통화 관리

(단위: 10억원)

지준을 인하를 감안한 1995년 말 잔액 ¹⁾	연간 증가 허용액 (증가율:14%)	본원통화 증가요인			필요 환수액 (증가요인계- 증가허용액)
		해외부문 (외환매입)	국내부문 (증가허용액 의 50%)	계	
26,485.2	3,707.9	5,399.3	1,854.0	7,253.3	3,545.4

주: 1) 민간보유 현금 및 지준을 인하를 감안한 필요 지준금액의 합계

지준을 인하로 인하여 방출된 자금의 흡수 및 해외자본 유입으로 인하여 해외부문에서 증가하는 본원통화를 흡수하기 위하여 통안증권을 발행할 경우 1996년 말 통안채 발행잔액은 1995년 말보다 약 9조 5천억원이 증가한 약 35조 3천억원에 달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이자지급으로 인하여 중앙은행의 수지가 극도로 악화되고 자동적인 통화팽창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

지준을 인하로 인하여 방출된 자금을 흡수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발행한 금액과 통화환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발행할 금액을 합친 1996년중 통안증

해외자본 유입에 따른 환율 및 통화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국내 금리의 하향조정으로 기업의 해외 자금도입을 축소하는 것이다.

권 신규발행액은 약 6조 3천억원에 달하게 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게다가 통안증권 이자율을 연 11%로 가정할 경우 기존발행액과 추가발행액에 대한 이자가 약 3조 2천억원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안증권에 대한 이자 지급으로 인하여 중앙은행의 수지가 극도로 악화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할 경우 자동적인 통화팽창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통화팽창의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통안증권의 이자를 흡수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통안채의 발행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표 7〉 통안증권 발행잔액 예상

(단위: 10억원)

1995년 말 잔액	추가발행 예상액			1996년 말 예상 잔액
	통화환수를 위한 추가 발행	지준율 인하기로 인한 추가 발행	통안채 이자 환수를 위한 추가 발행	
25,824.9	3,545.4	2,740.0	3,235.9	35,346.2

주 : 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율은 연 11%를 적용하였음. 통화환수 및 지준율 인하기로 인하여 연내에 추가로 발행하는 분에 대한 이자는 각각 연간 지급액의 1/2과 2/3를 적용하였음.

환율 및 통화관리와 경상수지 적자관리를 위한 정책 제언

현재 국내금리가 국제금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외환 및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해외로부터 자본이 유입되어 국내통화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통화팽창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환율 및 통화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환율 및 통화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국내금리의 하향조정인 것으로 판단된다.

4월 말 현재 장기금리를 기준으로 할 때 국내외 금리차는 연율 약 4% 포인트(국내 회사채 수익률 연 10.44%, 미국의 장기국채 수익률 연 6.92%)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기업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추가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신용평가비용, 주선(周旋)수수료 등)과 해외투자자의 위험부담에 대한 프리미엄 및 국내기업이 부담하는 외환위험 등을 감안할 때 국내외 금리차

가 연율 1~2% 포인트 정도로 축소되면 국내기업이 해외자금을 도입하려는 동기는 현저하게 축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기업에 의한 해외자금의 도입을 허용함에 있어서 해외시설재의 도입 등과 연계하여서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금리차의 축소는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에 대하여서도 가장 근본적인 대응책인 것으로 판단된다.

1995년의 경우 해외시설재의 도입과 연계하여 허용된 해외자본 도입 금액은 약 120억달러에 달하였는데, 이와 같은 형태의 해외자본 도입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폭은 자동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해외자본 조달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기업들은 해외에서 자본을 조달하게 되고 이에 따라 해외시설재의 도입이 증가하기 때문에 국내 시설재 산업의 발달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경상수지 적자 및 국내 시설재 산업의 위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국내금리를 인하하여 기업들이 국내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국내 시설재를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의 자금조달 금리가 낮아지도록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개인연금과 같은 장기저축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연 10% 이상에 달하는 등 금융기관들의 자금조달 금리가 높기 때문에 실제금리가 더 이상 낮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게다가 국내금리가 하락할 경우 과소비 풍조가 만연되고 저축률이 낮아짐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에 지장을 초래하게 될 우려도 있다.

금리하락에 따른 저축률 하락을 방지하고 금융기관들의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기 위해 개인연금 등 장기저축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통화운영관련 시뮬레이션 결과

이상에서 점검한 경기 상황 및 환율·통화관리 여건 등을 감안한 통화운영 관련 시뮬레이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금년 2/4~4/4분기중 통화량 공급을 목표치보다 1% 포인트씩 줄인다면 금년 및 내년중의 연평균 소비자물가 증가율은 각각 0.01% 포인트, 0.15% 포

국내 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들의 자금조달 금리가 낮아지도록 개인연금과 장기저축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다.

통화공급의 증가가 있더라도 내년중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 내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나 현재 상태에서 통화 긴축은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개선보다는 경제성장률 감소효과가 더 크다.

인트 더 하락할 수 있으나 경제성장률은 금년 및 내년중 각각 0.15% 포인트, 0.32% 포인트 감소하게 될 것이다.

한편 금년과 내년중 무역수지는 각각 4억달러, 12억달러, 경상수지는 4억달러, 13억달러 정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성장둔화 및 물가안정을 통하여 조세수입이 감소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금년과 내년중 각각 920억원, 4,870억원 정도의 재정적자 요인의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의 통화긴축은 물가안정과 경상수지 개선에 미치는 효과보다는 경제성장률 감소에 미치는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통안증권 발행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효과적인 통화환수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에서 자본유입에 대해 통화환수만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경기 연착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긴축을 시도하는 것은 뚜렷한 인플레 심리 불안정후가 나타나지 않는 한 경기변동 사이클상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금년은 1994~1995년과는 달리 경기가 호황국면이 아니므로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한편 금년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통화량 공급을 1% 포인트씩 더 확대 시킨다면 금년과 내년중의 실질 GNP 성장률은 각각 0.17% 포인트, 0.32% 포인트 증가하며 소비자물가는 각각 0.01%, 0.17% 정도 상승하고, 무역수지는 3억 6천만달러, 13억 5천만달러, 경상수지는 4억달러, 15억달러 정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연평균' 대미환율은 금년중 달러당 0.07원, 내년중 1.85원 정도 평가절하시키게 될 것이다.

이는 금년과 내년중 각각 1천억원, 5,600억원 정도의 재정흑자요인으로 나타났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와 같은 통화공급의 증가가 있더라도 내년중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대로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금년 및 내년도까지의 물가안정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지의 여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판단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을 측정결과

소비자물가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470개 품목별 지수를 1975년 1월부터 1996년 3월까지 월별로 분석하여 소비자의 기대 인플레이션을 측정¹⁾해 본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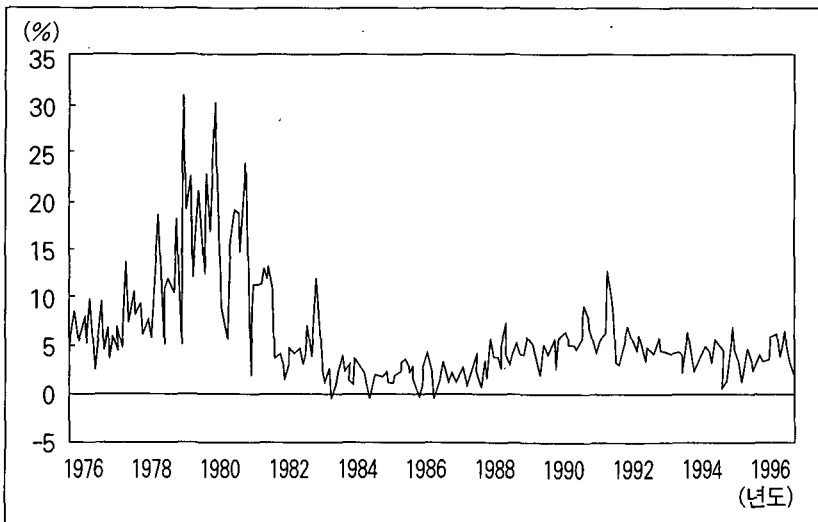
소비자의 기대 CPI 인플레이션율은 1994~1995년의 기간중 꾸준히 상승하다가 1996년 1월부터는 상승세가 멈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그 동안 지속되어 온 소비자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다소 진정되기 시작하였다는 판단은 할 수 있으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과연 뚜렷한 하향 안정추세를 형성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소비자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다소 진정되기 시작하였다는 판단은 할 수 있으나 뚜렷한 안정추세인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그림 5) 소비자의 기대 인플레이션율 측정결과

(단위: %)



2) 월별 실질금리 추이

[그림 6]에 의하면 명목 회사채 수익률을 생산자 물가지수의 전년 동월대비 증가율로 디플레이트한 실질금리(Method 2)는 금년 초 들어 다소 상승하기 시작하였지만 대체로 1982년 이후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명목금리를 디플레이트하는 보다 표준적(standard)인 방법인 Method 1에 의해 실질금리를 구해 보아도 1980년대 이후 실적 전체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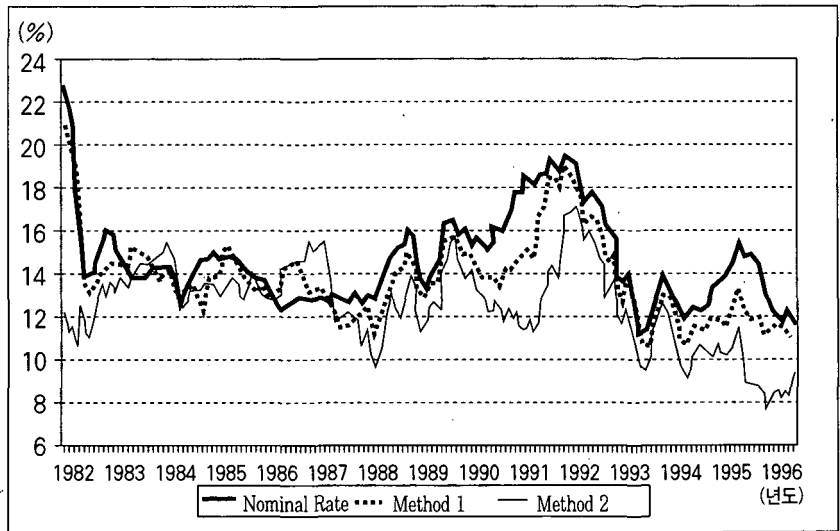
1) 이 방법은 470개의 개별지수들을 계절조정된 뒤 전월 대비 증가율의 데이터를 각 품목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경험적 분포를 월별로 구한 뒤 이 분포의 가중평균(trimmed sample mean)을 측정한 것임. 이 분석의 내용에 대해서는 박종규, 「Core 인플레이션을 측정과 인플레이션 충격」, mimeo, 한국조세연구원, 1996. 4를 참조.

실질금리는 1980년대 이후와 비교하여 최근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음을 볼 때, 최근의 투자둔화는 금리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했을 때 최근까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실질금리의 증가는 대략 3분기 정도의 시차를 가지면서 불변가격 설비투자를 감소시키는 시차관계에 비추어 최근의 투자둔화는 금리요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실질금리 추이로 보았을 때 최근까지 통화가 긴축적으로 운용되어 왔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림 6) 명목금리와 실질금리(생산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



주 : Method 1: 회사채 수익률 - 계절조정 생산자물가지수 전월대비 증가율의 6개월 이동평균
Method 2: 회사채 수익률 - 생산자물가지수의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결국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특별히 통화를 긴축적으로 운영하거나 또는 팽창적으로 운영해야 할 뚜렷한 요인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경제전망에서처럼 연착륙에 따른 수입둔화로 인하여 금년 하반기 들어 무역수지가 개선되기 시작한다면 종합수지 흑자폭의 증가로 인한 통화량 증가분에 대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환수하려 하기보다는 통화 증가율 목표치를 다소 신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어려워진 통화환수 여건이나 경기전망 추이 등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검토할 만한 방향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III. 엔/달러 환율 전망과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엔/달러 환율 전망

미국과 일본의 경제성장률, 국제수지 및 금리 등의 상대적인 변동을 감안할 때 엔/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현재 수준(1996년 5월 20일: 1달러당 106.8 엔)에서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나 1996년 말까지 1달러당 110엔 수준을 크게 웃돌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일본의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의 상대적인 변동으로 인하여 달러화의 가치는 상승하는 반면 엔화의 가치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8> 주요 예측기관의 미·일 경제지표 및 엔/달러 환율 전망

		실적		전망			
		1994	1995	1996		1997	
				WEFA	DRI	WEFA	DRI
미국	실질GDP증가율(%)	3.5	2.0	2.1	1.7	2.3	2.0
	소비자물가상승률(%)	2.6	2.8	2.6		2.5	
	무역수지(10억달러)	-166.1	-174.5	-141.1		-144.7	
	경상수지(10억달러)	-157.2	-152.9	-125.5		-123.2	
	단기금리(연율 %) ¹⁾	4.6	5.9	5.2		5.0	
	장기금리(연율 %) ²⁾	7.1	6.6	6.0		5.7	
일본	실질GDP증가율(%)	0.5	0.7	2.6	2.5	3.6	3.0
	소비자물가상승률(%)	0.7	-0.1	0.2		1.3	
	무역수지(10억달러)	145.8	121.2	102.9		135.7	
	경상수지(10억달러)	129.1	111.1	58.8		59.1	
	단기금리(연율 %) ¹⁾	2.2	1.2	0.8		2.1	
	장기금리(연율 %) ²⁾	4.4	3.3	3.5		4.8	
엔/달러 환율 ³⁾		99.6	103.4	108.0	105.5	113.0	104.0

주 : 1) 3개월만기 CD수익률, 2) 10년 만기 정부공채수익률, 3) 기말기준

자료 : WEFA, *World Economic Outlook*, 1996년 5월호, *Foreign Exchange Market Outlook*, 1996년 4월호, DRI, *World Markets Country Summaries*, 1996년 2/4분기, *International Financial Bulletin*, 1996년 4월호.

환율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서 엔/달러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

1996년 들어 미국의 물가상승과 엔/달러 대적인 변동일 것으로 보인다.

1995년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1994년에 비하여 다소 확대된 1,745억달러를 기록하였으나 1996년에는 상당폭 축소되어 1,411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무역수지 흑자규모는 1994년 1,458억달러에서 1995년에는 1,212억달러로 축소되었으며 1996년에는 1천억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요 예측기관들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규모는 점차 축소되고,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점차 작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과 일본의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의 상대적인 변동으로 인하여 달러화의 가치는 상승하는 반면 엔화의 가치는 하락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엔/달러 환율 상승).

또한 현재 상대적인 구매력에 비하여 엔화의 가치는 상당폭 고평가된 반면 달러화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이 단기적으로 현재수준보다 하락(엔화 가치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스탠포드 대학의 맥케논(McKinnon) 교수는 각 통화의 상대적인 구매력을 기준으로, 원/달러 명목환율이 적정한 수준이었던 기간은 1985년 중반부터 1986년 중반까지였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1985년부터 1986년까지의 기간 동안 엔/달러 실질환율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1995년 4/4분기 엔화는 달러화에 대하여 30% 이상 고평가된 수준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같은 기간 각 통화 실질실효환율의 평균을 기준으로 평가할 때 1995년 2/4분기 달러화의 가치는 약 30% 저평가된 반면 엔화의 가치는 약 46% 고평가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1996년 들어 엔/달러 명목환율이 다소 상승하고 미국의 물가상승률이 일본에 비하여 다소 높았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엔화의 달러화에 대한 가치는 20% 이상 고평가된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엔/달러 환율을 하락(엔화 가치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는 미국과 일본 국내 경기의 변동에 따른 양국 금리의 상대적인 변동일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엔/달러 실질환율 및 실질실효환율 추이
(1985~1986년 평균=100)

	1992	1993	1994	1995			
				I	II	III	IV
엔/달러 실질환율	76.5	70.8	67.9	65.2	58.7	65.1	69.9
실질실효 환율	75.8	78.4	76.8	73.3	69.5		
달러 엔	110.6	127.2	132.5	133.6	146.1		

주 : 1. 실질환율 및 실질실효환율은 도매물가(생산자물가)의 상대적인 변동을 감안하여 산출.
2. 실효환율은 무역비중을 가중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음.

자료 : IMF, IFS.

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볼 때 엔/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는 현재 수준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달러당 110엔 내외의 수준에 머물것이다.

미국의 실질GDP 증가율은 1994년 3.5%에서 1995년에는 2%로 하락하였으며 1996년에도 2%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예측기관들은 미국의 FRB가 재할인율을 현재의 5%에서 하향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장·단기 금리는 현재 수준보다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국내 경기는 1995년 4/4분기부터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기관들은 1996년 일본의 실질GDP 증가율이 2.5%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본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경우 일본은행은 재할인율을 현재의 0.5%에서 상향조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때 일본의 장·단기 금리는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국내금리가 상승하는 반면 일본의 국내금리는 하락할 경우 엔/달러 환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WEFA는 엔/달러 환율이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1996년 말에는 1달러당 108엔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DRI는 5월 말까지 점차 상승하여 1달러당 109.5엔 수준에 도달한 후 점차 하락하여 연말에는 1달러당 105.5엔 수준에 도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주요 기관들의 예측과 미국과 일본 경제의 상대적인 변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엔/달러 환율은 단기적으로 현재 수준보다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있으나 연말까지 1달러당 110엔 수준을 크게 상회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엔/달러 환율이 1% 상승할 경우 일본의 수출가격은 0.8% 하락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수출가격은 0.11% 하락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된다.

엔/달러 환율 상승이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수출가격은 0.8% 하락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수출가격은 0.11% 하락에 그치는 것으로 추산된다.

많은 경우 우리나라 수출품은 해외시장에서 일본제품과 경쟁관계에 있고 수출품을 생산하기 위한 자본재 및 주요 부품 등 중간재의 대일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엔/달러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달러화로 표시된 일본의 수출가격이 변동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입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증분석의 결과 엔/달러 환율이 1% 상승할 경우 달러화로 표시된 일본의 수출가격은 약 0.8%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김종만, 『일본의 환율정책과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영향』, 1993 참조).

이에 따라 일본제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 수출품의 가격(달러화 표시)은 약 0.11% 하락하고 수출물량은 약 0.10%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는 바, 이와 같은 가격효과와 물량효과를 종합할 경우 수출금액은 약 0.21%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엔/달러 환율이 1%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수입품의 가격은 전반적으로 약 0.16% 하락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으며,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국내수요의 가격탄력성이 극히 낮기 때문에 수입물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엔/달러 환율 1% 하락으로 인한 우리나라 수입금액의 감소효과는 약 0.16%인 것으로 추산된다.

〈표 10〉 엔/달러 환율 1% 상승이 우리나라 수출입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

(단위: %)

수 출			수 입	
수출가격	수출물량	수출금액	수입가격	수입금액
-0.106	-0.101	-0.207	-0.159	-0.159

주 : 1975년 1/4분기부터 1995년 2/4분기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추정한 결과임.

이와 같은 분석의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앞으로 1996년 말까지 엔/달러 환율이 1달러당 평균 106엔 내지 107엔으로 상승(1995년 하반기 1달러당 평균 97.8엔으로부터 8~9%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금액은 약 1.5% 내지 1.7% 정도 감소하고 수입금액은 약 1.2% 내지 1.3%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1996년중 우리나라 수출금액의 감소효과는 약 18억달러 내지 20억달러에 달하고 수입금액의 감소효과는 약 15억달러 내지 16억달러에 달하여, 무역수지는 약 3억달러 내지 4억달러 악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가격(달러 표시)의 하락으로 인한 수출물량의 증가는 장기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수출금액의 증가효과는 3~4분기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지만(J곡선효과) 엔/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수출입금액의 감소는 비교적 단기간(엔/달러 환율변동 후 1분기) 내에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KEP**

엔/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수출입 금액의 감소는 1분기 내의 단기간에 나타나지만 원/달러의 환율상승으로 인한 수출물량의 증가는 3~4분기 후에 나타난다.

8월호 『재정포럼』 주요내용 안내

현안분석

- 일본 법인세 논쟁의 개요
- 미국의 예산분쟁과 예산회계제도
- 업종전문화시책의 평가

정책연구

-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방안
- WTO체제 출범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향

정책토론티포트

- 금융과 산업간 관계의 발전방향
- 1996년 상속세법 개편방향

이 외에도 다양한 재정정보와 재정통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정포럼』은 매월 15일 발행합니다.



정책토론포트

●국세행정의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54

●경미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56

●국제조세워크숍/59

●「신경제 장기구상」 세제부문/61

국세행정의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 이 원고는 1996년 2월 29일 한국의환은행 대회의실에서 「국세행정의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조세의 날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정당국의 개선 노력과 평가

그간의 조사보고서상에서 제안된 국세행정의 개선과 관련한 제안들의 경우, 국세당국이 이들 제안을 반영하려고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서 확인되지만 상당수의 정책 제안은 아직까지도 숙제로 남아 있다. 이들 중에는 세정(稅政)의 한계 등으로 실행 후 철회했거나 유명무실화한 정책이 있는가 하면 아예 시도해 보지도 못한 정책도 상당수 있다.

주목할 것은 30여년 전에 제안된 머스그레이브 교수의 제안 중 상당수가 오늘날에도 우리 세정의 핵심 추진과제로 남아 있고 1985년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제안한 보고서의 제안들은 아직까지도 상당수가 숙제로 남아 있어 매년 세제개혁 때마다 감초처럼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행인 것은 1997년의 국세통합전산망의 정비를 앞두고 당국이 세정선진화 기획단을 구성하고 1996년 1월 '국세행정 선진화 추진 지침'을 마련해 추진하려는 의도를 밝히고 있는 점이다. 이번 계획이 여느 때의 계획

과 다른 것은 전산망 정비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계획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점이다.

국세행정의 도약을 위한 정책방향

국세행정의 도약을 위한 정책방향을 단기, 장기로 나눌 경우 단기방향은 그 동안 납세자 부담을 증대시켜온 각종 제도를 실천가능한 것부터 고쳐 나가는 것이고 장기방향은 당국이 보이는 손(visible hands)을 사용하여 세원(稅源) 발굴과 관련한 혁신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가고 납세자에게 이의 추진에 대한 동의를 받아내는 것이다.

단기 정책과제

단기 정책과제는 세수증대효과는 적으면서 납세에 따른 정신적·물질적 부담만 늘리는 제도나 조치의 과감한 정비, 통합전산망 가동에 따라 전산 이용의 효과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사안의 정비, 자영업자의 법인사업자화 유인,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단말기의 보급 확대를 통한 근거과세 기반

확충, 신고납부제 시행에 따른 영세사업자 부담 완화 등이다.

장기 정책과제

현재 포착되지 않고 있는 세원의 발굴과 납세관련업무의 전반적인 전산화의 추진이다. 21세기에도 세무조사반을 투입해 거래 장부를 뒤지는 수사에만 의존해서는 곤란하다. 21세기에는 국세청 내부의 전산화 이상으로 일선 사업장의 전자화와 이를 국세청 전산망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중요성을 지닐 것이다. 전국적인 전산망 체계의 확립이 공평하고 근거있는 과세 확립의 지름길이다. 중국적으로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자에겐 기존의 장부기장이나 무기장 대신 전자기장(電子記帳)을 도입해 저코스트로 부담이 되지 않는 세부담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신중한 조율작업이 병행되어야

이상의 단·장기 세정관련 정책이 중소기업자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고 이에 따라 당국의 대응전략을 논의해야 한다. 단기 정책과제에서는 일련의 실천가능한 정책들이 중소기업자들에게 득을 안겨주는 측면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납세협력의 부담을 늘리는 정책은 신고납부제를 포함해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문제는 장기 정책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기장의 전자화이다. 전자기장으로 과표가 드러나 세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부담의 증대가 기장기술

의 혁신을 막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기장기술의 혁신이 중소기업가와 납세당국 모두의 납·징세비용을 줄여 우리 사회를 살찌우는 '플러스섬(plus-sum)' 적 성격의 공동선인 반면, 세부담 문제는 납세자와 당국 혹은 납세자간의 '제로섬(zero-sum)' 적인 줄다리기 게임

국세행정의 도약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그 동안

납세자부담을 증대시켜 온 각종제도를

고쳐나가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세원발굴과

관련된 혁신적인 장치를 강구해 납세자에게

이익의 추진에 대한 동의를 얻는 것이다.

이기 때문이다. 물론 신기술의 도입이 중소기업자의 세부담을 급격히 늘리는 일이 없도록 신중한 조율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김기**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방향

* 이 원고는 1996년 4월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마산업 발전을 위한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의 주요내용입니다.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경마산업 비교

우리나라 경마를 주요국의 경마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경주마는 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한 경마환경하에서 경주를 하고 있지만 우리 경마의 1경주당의 마권매출액, 상금액은 세계 제3위의 수준에 있다.

둘째, 우리나라 경마의 환급률은 70% 수준으로 10대 경마국 중 가장 낮으며 낮은 환급률의 가장 큰 원인은 높은 세율체계에 있다. 1996년 현재 각종 세율 합계는 마권매출액의 약 18%로 세계 최고수준이다.

셋째, 마권관련세목의 중심세목인 마권세가 지방세인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이고 환급금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브라질이며 우리의 경우 두 나라보다 적용범위가 넓고 세율도 높다.

넷째, 마주(馬主)의 경마관련 상금소득은 유리지갑 속의 소득처럼 투명도가 높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 투명도가 낮은 여타 사

업소득과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어 불평의 소지가 남아 있다. 이 문제는 소득의 투명도가 높은 사업소득자 전반에 관련된 문제로 보다 넓은 시각에 의한 접근이 필요하다.

다섯째, 마주상금(馬主賞金)의 대경마시행기관 소득금(=마권매출액-환급금-조세)비율, 1착 마주의 상금비율, 마주상금의 직종간 배분에 있어서의 마주 몫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

여섯째, 경주마의 국내생산 확대문제는 양적 확대만큼 질적 개량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국제 경주마 시장은 수요자 중심 시장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왜냐하면 주요국의 경마가 피크기(期)를 지나 조정기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일곱째, 우리의 경우 경마와 경쟁할 수 있는 갬블링이 다종다양하지 못해 경마우위가 한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가장 강력한 갬블링이었던 '고스톱' 등 화투놀음의 대체재로 경마가 대두되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적정한 조세부담과 과세대상의 저변확대가 바람직

경마관련 조세체계를 사행행위에 대한 징벌적 과세나 무통세(無痛稅: painless tax)에서 건전한 대중오락 과세와 경마산업과 경주마생산 산업 육성이라는 산업정책적인 고려가 내포된 조세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적정한 조세부담과 과세대상의 저변확대가 바람직하다.

먼저 과표의 중복으로 인한 복잡한 과세체계는 단순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마권세에 이미 소비과세와 소득세의 특성이 내재되어 있는바, 필요하다면 마권세의 세율을 조정하더라도 여기에 부가하여 목적세 아닌 목적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제와 세정의 단순·명료성 원칙에 위배된다. 기타소득세도 이미 마권세에 소득세가 융합되어 있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마권세의 세율을 조정해서라도 기타소득세는 장기적으로 부과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마관련 조세체계의 국세와 지방세, 지방세 중에서도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의 세원배분에 있어 현재와 같은 체제라면 이를 국세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지만 경마관련 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감안하면 현 체제에서 한단계 발전시킨(장외발매소의 세원은 당해 장외발매소 소재 자치단체에 배분) 광역 자치단체의 세원으로 존치시키는 것도 무방하리라는 판단이다.

한국마사회 소득금의 수준이 주요 외국과 비교하여 그리 높지는 않다고 해서 경마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경마시행에 있어 독점적인 지위와 개인 마주들에 대한 진입장벽, 조교사와 기수, 관리사와 마사회나 마주와의 관계, 그리고 경주마의 질적인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경마고객은 적정한 상품관리를 통해 질 좋은 경마를 제공받지 못하

경마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이익금적립을 통한 시설투자

경주마생산 산업의 국내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징벌적 과세체계에서 탈피하여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정비해야 한다.

고 있다고 판단된다. 엄격한 품질관리와 적정한 수준의 환급 및 상금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최근 수년간의 폭발적인 매출액 증가 추세는 체제정비에 대한 수요를 크게 감소시키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본격적인 확산을 위한 제도적인 정비를 통한 경마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가 경마산업발전에 필요하다.

경마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

경마산업이 단순한 도박이 아닌 건전한 대중오락 및 스포츠로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경마관련 세부담이 적정한 수준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세계적으로 고율의 세

금을 부과하는 것은 경마산업에 대한 인식이 사행성에 지나치게 비중이 두어지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경마산업이 건전하게 육성·발전되기 위해서도 징벌적인 조세체제는 정비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마사회의 소득금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여 상금수준과 환급률의 수준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경마산업의 장기적인 발전과 고객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이익금의 적립을 통한 시설투자과 함께 '박리다매의 원칙'에 입각하여 마사회 소득금 수준을 인하하여 환급률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상금수준의 제고를 통한 경마의 품질관리(quality control)가 매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경마가 산업으로 정착하고 건전한 오락으로 저변확대가 가능하려면 경주마의 국내생산이 필요한바, 이를 위한 생산자상금과 기금의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미미하게 주어지고 있는 생산자상금의 확대와 축산진흥기금의 내용을 재조정하여 재원의 조달과 운영을 연계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경마에서 얻어지는 수익은 관련자에게 고르게 배분하되 배분된 수익이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마의 발전은 마사회, 마주, 조교사, 기수, 생산자 모두가 끊임없이 자기발전을 기할 때 비로소 가능하기 때문이다. **KPR**

한국조세연구원 도서회원이 되시면...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보고서 및 각종자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각종 세미나 및 심포지엄, 토론회 등 연구행사에 우선 초청자격이 주어집니다.
- 본 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도서 및 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기존 출간도서 구입사 40% 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 기간중에 회비가 오르더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문의처 : 한국조세연구원 출판팀
전화 (02) 3460-2131~2
팩스 (02) 578-9385

국제조세 워크숍

* 이 원고는 1996년 4월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근의 국제조세 동향에 관한 국제워크숍」의 주요내용입니다.

개최 배경

최근 경제활동의 세계화가 가속됨에 따라 국제조세 문제가 세계 각국 조세정책 당국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전가격 과세제도를 개편하고 과소자본세제를 도입하는 등 국제조세제도를 정비하였다.

새롭게 정비된 우리나라의 국제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제조세 담당 세무공무원의 수준을 제고하여 선진국 수준의 전문가로 육성할 필요가 있고, 또한 OECD의 가입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국제조세 담당요원들로 하여금 관련된 국제규범을 숙지하고 OECD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의를 신속하게 파악하여 OECD 회원국들과 잘 조화되는 국제조세 행정을 펴나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OECD 재정위원회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국제조세 관련 담당자들을 교육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의 국제조세 전문가를 육성하

기 위하여 국제조세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교육대상

교육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국제조세 담당자 43명, 관세청의 국제조세 담당자 1명, 국제조세 정책을 입안하는 재정경제원의 담당자 2명, 한국조세연구원의 국제조세 전문가 4명 등이다.

주요 교육내용

첫번째 주에는 다음과 같은 조세조약상의 주요 논점들에 대해 강의

- 국제조세의 최근 동향
- 고정사업장 관련 과세제도
- 과소자본 규제
- 소프트웨어, 노하우 및 전문기술용역에 대한 과세
- 신금융상품에 대한 과세
- 납세자 보호

두번째 주에는 이전가격 과세제도와 관련된 주요 논점들에 대해 강의


- 이전가격세제의 최근 동향

- 최근의 이전가격 결정 판례
- 독립기업가격원칙의 적용방법
- 비교이익법, 이익분할법, 순거래이익법 등 이익기준법의 사례
- 무형재화 및 용역에 대한 이전가격과 세
- 신금융상품과 관련된 이전가격 문제
- OECD국가들의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

국제조세 동향에 대한 국제 워크숍

4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교육대상자들을 포함하여 국내에서 국제조세 관련 업무 또는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학계, 관계, 업계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OECD 전문가들과 최근의 국제조세 동향에 대해 토론하는 워크숍을 개최.

<주제발표>

- 제1주제: Globalisation: The Implications for Tax Policies(발표자: Jeffrey Owens, Director, Fiscal Affairs Division, OECD)
- 제2주제: Developments in OECD Transfer Pricing Guidelines(발표자: Frances Horner, Fiscal Affairs Division, OECD) 

1996년도

한국조세연구원 발간도서 안내

■ 연구보고서

- 96-01 국제통화제도의 개편논의와 우리나라의 대응
김종만/B5변형/193면/96.4
/값 6,000원
- 96-02 교육재정의 구조와 재원확충방안
박정수 · 안종석/B5변형/212면
/96.4/값 7,000원
- 96-03 기업간신용과 생산자자유통금용의 현황 및 정책과제
이기영/B5변형/156면/96.5
/값 5,000원

■ 정책보고서

- 96-01 예금보호제도의 도입방안과 외국사례 분석
최장봉 · 안종길 · 김기홍/B5변형
/393면/96.4/값 12,000원
- 96-02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방안
정영현 · 박정수/B5변형/132면
/96.6/값 4,000원
- 96-03 WTO체제 출범에 따른 조세지원제도의 개편방향
임주영/B5변형/74면/96.6
/값 3,000원

■ 연구논문집

- 96-01 조세정책과 소득재분배
현진권(편)/B5/319면/96.4
/값 11,000원

■ 기타보고서

경마산업의 발전과 조세정책
배준호 외/(근간 예정)

『신경제 장기구상』 세제부문

* 이 원고는 1996년 5월 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세제도 및 조세행정의 중·장기 발전방향'을 주제로 개최된 『신경제 장기구상』 세제부문 공청회의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제와 세정의 현황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세목수가 선진국에 비해서 많고 세수기여도가 낮거나 중복되는 세목이 많으며 목적세의 경우에는 수익자부담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사이의 세원배분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일관성 있는 조세정책을 유지하지 못함으로써 경제주체로 하여금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심어주어 합리적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또한 조세정책이 소득 및 부의 재분배를 지향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재분배의 성과는 미흡하며, 조세정책의 여론형성과정에서 여론수렴 절차가 미진하여 비합리적인 요소를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성장 우선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재원의 원활한 조달을 위하여 세제와 세정이 주로 과세자인 징세당국의 입장에서 운영되어 왔으며 그 결과 납세자의 권익이 크게 침해되어 왔다.

조세환경의 변화

21세기 조세환경에 영향을 미칠 주된 변화요인으로 지방화, 국제화, 정보화, 노동화, 생활환경의 고도화 등이 고려될 수 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수요가 증대되어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배분 문제가 부각되고 이로 인해 국세와 지방세간의 울타리 조정, 지방세의 신설, 자치재정권 논리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에의 세원 이양 요구 증대 등 근본적인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노하우, 브랜드 등 정보기술서비스의 수출입과 자본의 유출입이 늘고 해외투자와 해외생산이 일반화되면 국가간의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이 심화되고 이를 피하기 위한 국가간 조세 조화(Tax Harmo-

nization)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다. 인력부족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존 인식에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무행정도 이에 대응해 전산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2020년에는 1950년대 초반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기에 접어들어 본격적인 노령사회로 이행해 갈 것으로 전망되므로 사회복지 수요가 증대할 것이다. 국민의 전반적인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생활환경의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가 점점 증가하게 될 것이다.

21세기의 비전과 발전전략

개방화와 각종 규제완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정정책이 거시경제운용을 위한 유력한 정책수단으로서 주목받게 되었으며 재정정책의 한 축인 조세정책은 정책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조세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인 제반여건이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각종 조세감면 등으로 세원이 취약한 상태에서는 세율변화의 유인효과가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먼저 조세감면제도를 정비하고 둘째, 조세제도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행정의 여건을 정비하며 셋째, 조세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경제주체로 하여금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세제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고 증대하는 사회간접자본의 수요와 사회복지수요를 충

족하기 위해 지금보다 조세부담률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특별한 세제개편이 없다고 가정하고 단순히 과거의 추이를 이용하여 세수규모를 추계한 결과에 의하면,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증대하여 2020년에는 약 25%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정착, 국세통합전산망 구축에 의한 세무행정의 과학화, 포괄적 소득세제의 도입 정착 등에 의해 소득과세의 비중이 커질 전망이며, 재산과세는 그동안 재산이전과세의 비중이 재산보유과세보다 월등히 컸으나 재산세 과표현실화를 통해 재산보유세 중심체제로 발전할 전망이다.

납세자의 주권이 향상되고 나아가 납세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사회가 되며 아울러 세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면 납세의식 수준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

세제개혁의 기본방향

바람직한 조세제도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형평성, 명료성, 효율성, 납세·징세의 경제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기에는 아직 우리의 세제와 세정의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2000년까지는 기존의 미비된 세제여건을 정비하기 위한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그 후 성숙된 여건하에서 변화해 가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개혁을 추진하되 2020년까지 추진할 개혁과제를 장·단기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세제여건의 정비를 위한 개혁방향

세제의 간소화와 합리화를 위한 조세체계 개편

장기계획에 의거해 현재 31개인 세목(국세 16, 지방세 15)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하여 간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당이득세는 폐지하고 토지초과이득세는 지가급등에 대비한 예비적 장치로서의 기능이 인정되므로 대안의 도입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폐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세목으로 존재하는 이유가 불분명한 전화세는 부가가치세에 통합하며 지방세 중 세목의 기능이 같거나 유사한 세목을 통합시킨다.

목적세는 각 세목의 기능과 운용의 실상을 검토하여 본세에 통합할 것과 독립된 세목으로 유지시킬 것을 구분하여야 한다.

교육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본세에 통합하되, 국세분 교육세는 본세에, 지방세분 교육세는 해당 지방세에 통합하고, 교통세는 장기적으로 특별소비세와 함께 소비세(국세)로 통합하며, 농어촌특별세는 시한 만료 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발부담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국세와 지방세의 재산관련세제의 정비와 함께 재산관련세로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세체계의 선진화

조세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해서 소득세

기능을 강화하고 재산관련과세를 취득 보유 처분 단계별로 주기능을 재정립하여 보유단계과세를 강화하도록 세목별 세부담을 재조정해야 한다.

조세감면제도의 합리화

조세감면제도 정비의 방향은 재분배를

개방화와 각종 규제완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재정정책이 거시경제운용을 위한

유력한 정책수단으로서 주목받게 되었으며

재정정책의 한 축인 조세정책은

정책수단으로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위한 감면제도는 축소하고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감면제도는 지원방법, 지원강도, 지원범위 등의 측면에서 국제적 규범과 경제원리에 맞게 운영해 나가는 것이다.

근거과세의 확립과 납세서비스 강화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근거과세제도를 확립시켜 세제상의 수평적 공평성을 확보하고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금보다 더욱 납세자 위주의 행정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관성(貫性)있고 합리적인 조세정책의 추진

세제개편의 필요성 제기, 각 계층의 의견 수렴, 세제발전심의회 논의, 국회심의, 세법개정, 사후효과점검 등의 과정이 보다 투

명하고 정합성을 지니도록 해야 한다.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개혁방향

지방화

지방재정의 확충을 도모하는 방식에는 지방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식과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확충을 통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대별될 수 있는데, 지방세의 비중을 대폭 높이는 방법은 미국 및 일본과 유사한 형태를 지향하는 것으로 우리 현실에 있어 부익부 빈익빈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지방세의 확충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적정한 균형을 모색하는 유럽제국의 형태가 우리에게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국제화

과거에는 재화 및 용역이 중심이 되었던 국제 경제교류에서 자본 등 생산요소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따라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의 국제적 조화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의 국제적 조화를 위해서는 과세의 국가간 형평성, 자원이동에 대한 조세의 중립성, 납세자간의 공평성을 달성하는 조세체계의 합리화 및 국제적 조화를 이룩하고, 국제적이중과세 및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보화

근거과세가 확립되지 못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본연의 기능에서 상당히 괴리되어 있는 현실이므로 보다 투명화된 납

세환경의 조성으로 납세자와 징세자간의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련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세무업무의 전산화를 추진한다.

노령화

공적연금제도의 연계방안을 마련하고 공적연금이 기업연금이나 개인연금과 함께 합리적인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재정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노후소득관련 세제지원도 제도간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장기적으로는 연금보험료의 각출단계에서 소득공제하고 급부단계에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생활환경의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중국적으로는 개별소비세제를 통합한 소비세의 과세목적은 외부불경제의 축소, 과세의 형평성 제고 측면이 강조되도록 하고 석유류는 국가기반시설(infrastructure) 투자재원 확보, 환경세, 주행세의 성격이 강조되도록 과세를 강화하며 주세의 과세목적은 세수확보 측면보다는 음주에 따른 폐해, 즉 외부불경제 축소 측면에 더욱 특화하여야 한다.

소득세제의 발전방향

단기개편방향

소득세 기능을 강화하고 소득간 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소득 등과 같은 과표양성화가 미진한 소득에 대한 적극과세로 입해야 할 것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신고안내서비스와 신고서식의 간소화를 추진해야 하며 아울러 실물보유채권에 대해서 차등 원천징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장기개편방향

장기적으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없애고 전면적인 종합과세를 시행하기 위해 모든 금융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고 따라서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소득세제를 거의 모든 소득을 열거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포괄주의로 변경한다

노후소득보장제도 각출단계의 소득공제를 통한 세제지원과 급부단계의 과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계화시대에 부응하는 기업과세제도의 확립

단기개편방향

WTO에서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국산우대조항이 있는 각종 투자세액공제제도는 국산우대조항을 폐지함으로써 항구적인 투자촉진제도로 정비하며, 일몰법을 도입하여 감면의 항구화를 방지하여야 한다.

장기개편방향

법인세의 낮은 세율 과세대상 범위를 축소하여 대부분의 기업에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체계를 단순화하고, 높은 세율

은 선진국 수준보다 다소 낮은 상태로 유지하여 국가간 자본이동에 대한 중립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내 조세수입을 극대화하여야 하고 조세지출예산제도를 도입하여 조세지원 전반을 국민이 통제·관리하도록 한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간접외국납부세액

장기적으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없애고

전면적인 종합과세를 시행하기 위해

모든 금융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하고

따라서 유가증권 양도차익

과세 도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제는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상대국가를 불문하고 모든 해외소득에 대해 허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내국 법인간 배당에 대해서도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내국법인의 국내투자과 해외투자에 대한 왜곡요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개별소비세제의 합리화

단기개편방향

석유제품에 대한 세율을 대폭 인상하고 비과세 유종도 과세한다.

장기개편방향

교통세를 본래의 특별소비세로 통합하고 개별소비세를 소비세의 명칭 아래 통합한다.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을 사치품, 석유류, 자동차, 환경오염 유발품목 등으로 하여 환경보정적·주행세적 성격을 강화하고 세제체계를 단순화시킨다.

종국적으로 소비세의 과세목적은 외부불경제 축소, 과세의 형평성 제고로 하고 석유류과세는 국가기반시설, 투자재원 확보, 환경세, 주행세 중심으로 개편한다.

주세의 과세목적은 외부불경제 축소 측면에 더욱 특화하고, 주세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외부불경제 축소를 위해 고급도와 알콜도수에 따라 주세율 체계를 정비한다.

관세제도의 선진화

단기개편방향

관세감면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관세감면제도를 WTO체제에 맞추어 산업별지원에서 기능별지원체제로 개편한다.

관세환급절차를 개선하여 수출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장기개편방향

모든 산업에 걸쳐 관세 인하를 해나가되, 산업의 경쟁력을 철저히 규명하여 산업에 따라 관세 인하의 속도를 달리함으로써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세수추이를 감안하여 기업의 원가부담 절감, 대외관세협상의 실효성 제고, 환급관련비용 절감 등을 위해 원자재에 대해 단계적으로 관세인하 무세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상속세제의 합리화

단기개편방향

현행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최고계급을 대폭 상향조정한다.

특정자산(부동산)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공제제도를 정비하고 현행의 배우자 공제방식을 유지하면서 금액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세대생략이전 과세제도의 경우 현행의 세율 20%의 가산규정이 너무 미흡한 측면이 있으므로 최고한계세율을 고려하여 별도의 세율로 과세해야 한다.

비상장주식 중 지배주식에 대한 10% 할증평가규정은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주식과 함께 경영권도 넘어가는 경우에는 상장·비상장의 구분없이 경영권을 평가하여 과세함으로써 주식만 넘어가는 경우보다 무겁게 과세한다.

장기개편방향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의 확대와 함께 장기적으로 최고계급구간의 세율을 조정하고, 부의 분산을 유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상속세 과세방법을 현재의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재산세제의 발전방향

단기개편방향

지속적인 토지보유세 부담의 증가는 현행의 종토세를 지방토지세와 (신)종합토지

세로 2분화한 후, 토지과다보유 억제와 세원편중문제 완화라는 중앙정부 정책목적 달성은 신중도세에서, 지방의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세입기반 향상은 지방토지세에서 각기 추구하도록 한다.

지방토지세는 토지·건물분리평가 및 분리과세의 문제점을 감안하여 (건물분)재산세와 통합과세하며, 서울구조는 누진세율에서 비례세율로 전환한다.

장기개편방향

공시지가제도는 토지보유세 과표형성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개선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양도소득세, 등록세, 취득세 등의 거래과세의 과표산정에는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액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부동산에 대한 등록·취득세는 보유과세의 증가규모에 상응하여 등록세·취득세의 통합과 세율의 인하(또는 수수료화)를 지방재정조정방안과 연계하여 추진한다.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는 소득공제제도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폭을 줄여 과세대상을 확대한 후 종합소득체계 내로 흡수한다.

과거의 과세대상 물건위주의 재산과세방식에서 납세의무자별(인별·가구별) 재산과세방식인 재산보유세를 도입한다.

토지초과이득세는 토지이용에 대한 과도한 왜곡과 과도한 징세비용의 문제가 있으나 지가급등에 대비한 예비적 장치로서의 기능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의 도입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폐지를 신중히 검토한다.

지방화시대의 바람직한 지방세구조

단기개편방안

현행 지방세제의 복잡성과 과표의 중복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세제의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도시 중과, 비업무용 중과 등 각종 중과세제도와 비과세·감면제도를

공시지가제도는 토지보유세 과표형성의 정확성을

제고하도록 개선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양도소득세, 등록세, 취득세 등의 거래과세의

과표산정에는 공시지가보다

실거래가액의 적용범위를 확대한다.

축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획일적인 지방세제의 단점을 극복하고 개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탄력세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개발세는 법정외 보통세제도의 도입시까지 지역의 특성에 적절한 세율을 발굴하여 활용할 수 있는 보통세로 전환시킨다.

장기개편방향

재산세를 중심으로 한 세원분리주의분은 지방세의 자주성을 제고하고, 소득세와 교통세는 세원공유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교부금, 양여금 등 현행 지방재정조정제도와 연계하여 검토한다.

지방재정의 확충과 지역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지방교부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인상하며 배분산식을 단순화하고 지방재정 조정제도간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각 자치단체 고유의 세원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정외세목의 설치를 명시적으로 허용하여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자동차세의 적정화 및 주행세·환경세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교통세의 일부분을 공유하여 도로과손, 환경오염 원인자부담 등 외부불경제를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거과세제도의 확립

단기개편방향

근거과세제도의 확립을 위해서는 기장에 의한 세무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

무작위표본추출을 통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고, 세무조사에 대한 면죄부의 역할을 하는 신고기준율제도와 표준소득률 제도는 폐지한다.

세무행정의 기본업무인 납세자 관리, 신고, 납부 및 환급, 조사, 징수, 체납정리 등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이므로 전산화를 통해 업무부담을 줄여야 한다.

장기개편방향

과표양성화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는 과세체계를 단순화시키고 근거과세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특례과세를 폐지하고 모두 일반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매출규모가 매우 작은 영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소액부징수제도를 유지

한다.

세정집행에 있어서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MSSP(market segment specialization program)를 도입하여 세무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세무서 조직을 세목별 조직에서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으로 개편한다.

IC카드라는 새로운 기억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기장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조세행정의 원활을 기할 필요가 있다.

납세자 권익보호

단기개편방향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한다.

세무서에 직접 와서 신고하는 체제에서 우편신고제로의 전환을 앞당긴다.

장기개편방향

세무대리인(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을 통하는 경우 전산신고방안을 강구한다.

납세자권리구제제도(지방세 포함)의 확충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음부즈만제도의 도입을 공무원의 평가 등 기존의 관행 및 제도 등의 개선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KIP



재정정보

정책흐름

1996년 1/4분기 국세실적

1996년 상반기 세법 개정(안) 내용

조세부담률과 1인당 조세부담액





다음은 2/4분기 동안 발표된 재정관련 주요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I. 1996년 1/4분기 국세징수 실적(재정경제원)

주요내용

- 재정경제원이 잠정집계한 1996년 1/4분기 국세징수실적은 16조 4,767억원으로 전년동기보다 19.2% 증가하였음. 참고로 1996년 예산증가율은 13.6%임.
- 1/4분기중 국세수입이 이와같이 호조를 보인 것은 1995년 12월 31일(일요일)이 납기인 교통세·특별소비세 등의 일부 세수가 1996년으로 이월된 사유 등에 기인함.

1996. 1/4분기 국세수입 현황

- 잠정집계한 1996년 3월까지의 국세수입 실적은 16조 4,767억원으로 작년보다 19.2% 증가하였으며 예산대비 25.6%의 진도비를 나타내고 있음.
- 1996년 1/4분기 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은 1995년 12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당일이 납기로 되어 있는 교통세(3,200억원), 특별소비세(1,600억원), 교육세(900억원) 등 일부세수가 1996년으로 이월되었기 때문임.

1996년 1/4분기 국세실적(잠정)

(단위:억원, %)

	1996년 예산	1996.1/4	(1995 대비)	진도비
총국세 (일반회계국세)	644,680 (560,568)	164,767 (148,105)	19.2 (22.2)	25.6 (26.4)
내국세	486,375	130,757	21.8	26.9
교통세	47,704	10,094	17.0	21.2
관세	50,495	12,378	18.0	24.5
교육세	43,876	7,286	-6.8	16.6
농어촌특별세	15,900	4,146	9.3	26.1

분석

- 법인세는 작년동기보다 49.9% 증가하였는 바 이는 1995년의 경기호조로 기업의 당기순이익이 증가하였고 채권의 과세방식이 보유기간별로 변경됨에 따라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세가 조기 징수된데 따른 것임.

12월말 법인의 1995년도 영업실적(상장법인 기준)

(단위 : 억원, %)

	1995년	1994년	증감률
매출액	3,163,975	2,533,111	24.9
제조업	1,590,296	1,292,730	23.0
비제조업	1,326,514	1,040,493	27.4
금융업	247,164	199,887	23.6
당기순이익	79,209	60,180	31.6
제조업	52,439	31,174	68.2
비제조업	15,939	16,236	-1.8
금융업	10,830	12,770	-15.1

- 소득세는 전년동기대비 20.8% 증가하여 내국세의 증가율 21.8%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
- 관세는 18.0% 증가하였으며 수입분 부가가치세는 1~2월의 수입증가에 따라 16.0% 증가하는 호조를 보임.
 - * 수입규모는 95년 1/4분기 305억달러, 96년 1/4분기 356억달러로 전년대비 16.7% 증가

부진세목

- 특별소비세는 3월분 납기인 1996년 3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3월 세수 약 1,600억원이 4월로 이월되어 작년에 비해 0.8% 증가에 그침.
- 주세는 소주·맥주 등의 출고부진으로 작년보다 10.8% 감소

주요주류 출고량

(단위 : 천kl, %)

	1996년 1/4분기	1995년 1/4분기	증가율
소주	194	193	0.3
맥주	419	432	-2.9

- 증권거래세는 주식시장의 침체로 1995년보다 45.7% 감소
 - * 상장주식 거래금액은 1995년 1/4분기 46조 6천억원, 1996년 1/4분기 27조 5천억원으로 전년대비 41.0% 감소
- 교육세는 자동차세의 납기조정(1995년에는 3월, 1996년에는 6월)으로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교육세 약 2,500억원의 납부시기가 순연됨에 따라 전년동기보다 6.8% 감소

금년도 국세수입 전망

- 금년도 연간세수는 앞으로의 성장, 물가, 수출입, 환율 등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현 시점에서 정확히 전망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고 부가가치세 예정신고(4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5월) 실적 등이 집계되어야 어느 정도 정확한 전망이 가능함.
- 그러나 1/4분기 실적분석에 근거하여 볼 때 국세예산(64조 4,680억원)의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1996년 1/4분기 국세실적

(단위 : 억원, %)

	1996예산(A)	1996.1/4(B)	(1995대비)	진도비(B/A)
총국세 (일반회계국세)	644,680 (560,568)	164,767 (148,105)	19.2 (22.2)	25.6 (26.4)
내국세	486,375	130,757	21.8	26.9
소득세	145,034	31,777	20.8	21.9
법인세	92,541	33,040	49.9	35.7
상속세	12,748	2,040	-13.5	16.0
부가가치세	160,205	42,803	16.0	26.7
특별소비세	30,932	7,777	0.8	25.1
주세	22,919	4,656	-10.8	20.3
전화세	5,888	1,507	20.7	25.6
증권거래세	6,610	875	-45.7	13.2
교통세	47,704	10,094	17.0	21.2
관세	50,495	12,378	18.0	24.5
방위세	330	106	-45.2	32.0
교육세	43,876	7,286	-6.8	16.6
농특세	15,900	4,146	9.3	26.1

Ⅱ. 1996년 상반기 세법 개정(안) 내용(재정경제원)

1) 국세기본법(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주요내용

- 국세기본법에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시행 근거규정을 마련함.
- '헌장'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세무조사시 등에 헌장 교부 의무화
 - 조세포탈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조사 배제
 - 프라이버시와 비밀엄수 의무
 - 세무조사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할 권리·대리인 의뢰권
 - 세무조사결과에의 서면통지 등

◇ 개정이유

- 지금까지의 우리 세정은 경제성장 재원조달을 위해 징세행정 위주로 운영되어 납세자의 권익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져 온 측면이 없지 않았음.
- 금년부터 소득세의 신고납부제도로의 전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 등 조세제도의 개선과 OECD 가입 등 여건변화를 계기로 조세행정의 선진화·세계화를 위한 정부의 조세행정 개혁의 지를 천명하고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최선을 다함.

2) 소득세법(근로소득세제 보완 등)

가. 근로소득세액공제 확충 및 소수가족 추가공제제도 신설

◇ 개정이유

- 1994년 소득세법 개정시 최저세율을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는 등 세율구조를 합리화하면서 근로소득공제를 확대하고 인적공제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종전보다 평균 20% 정도 세금이 경감되었음.

- 그러나 부분적으로 독신자 등 가족수가 적은 일부 중·저소득 근로자계층의 세금이 개정전에 비해 다소 늘어나는 현상을 해소함.

현행(1994 개정)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세액의 20% - 공제한도 : 50만원 ○ 인적공제(기본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1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세액 50만원 이하분 : 45% - 산출세액 50만원 초과분 : 20% - 공제한도 : (현행과 같음) ○ 소수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금액 상향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 : 연 100만 → 200만원(100만원 증가) - 2인 : 연 200만 → 250만원(50만원 증가) - 3인 : 연 300만 → 300만원(현행) - 4인 : 연 400만 → 400만원(현행)

◇ 시행시기 : 1996년 1월분 소득부터 적용

나.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 신설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과세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금에서 다음의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공제(퇴직금의 50%) • 근속공제(5년 이하분 연간 30만원~20년 초과분 연간 120만원) - 세액은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연분연승법에 의해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액 = (과세표준/근속년수 × 세율) × 근속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퇴직소득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함. ○ 공제한도 : 근속년수 × 24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만원 : 1995년 대비 1996년 세액이 가장 크게 증가하는 과표계급의 연분 증가세액

◇ 개정이유

- 근로소득의 경우와 같이 1994년도 최저세율의 상향조정으로 종전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문제점을 해소함.

예) 10년 근속 퇴직자가 퇴직급여로 2천만원을 받는 경우 부담세액
: 1995년 30만원 → 1996년 60만원 (30만원 증가)

◇ 시행시기 : 1996년 1월분 소득부터 적용

다. 근로자 식비 비과세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가 받는 식비 과세(복잡한 근로소득 비과세항목 정비 일환으로 1994년에 소득공제를 높이면서 과세소득으로 전환한 것임) * 1995년 이전 월급여 50만원 이하자의 근로자가 받는 현물제공 식사 또는 월 3만원 이하 식비(현금)는 비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나 월 5만원 이하의 식비는 비과세토록 함.

◇ 개정이유

○ 근로자의 복지후생을 지원하고 현물식사대의 과세에 따른 실무상의 어려움을 해소함.
비과세한도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월 5만원으로 책정함.

◇ 시행시기 : 1996년 1월분 소득부터 적용

3) 증권거래세법(상장외국법인주권 과세)

현 행	개 정 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의 상법이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에 대해서 증권거래세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 상장거래되는 외국법인의 주권(주식예탁증서 포함)도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에 추가함.

◇ 개정이유

○ 1996년 5월부터 자본자유화의 일환으로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도 우리나라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가능해짐에 따라 내국법인발행 주권과 외국법인발행 주권간 과세형평을 기함.

Ⅲ. 조세부담률과 1인당 조세부담액(재정경제원)

주요내용

- 최근 한국은행에서 1994년 GNP(확정치) 및 1995년 GNP(잠정치)가 발표되고,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결과(잠정)가 집계됨에 따라 조세부담률, 1인당 조세부담액 등을 다시 산정함.

(단위 : %)

	1994(확정치 기준)	1995(잠정치 기준)
조세부담률 ¹⁾	19.9	20.7
국세	15.6	16.3
지방세	4.3	4.4
1인당 조세부담액	136만 1천원	159만 5천원
국세	106만 3천원	125만 6천원

주 : 1) 조세부담률 = (국세+지방세)/국민총생산(GNP)

◇ 연도별 추이

조세부담률, 1인당 조세부담액

(단위 : %, 천원)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P)	1996년(예산기준)
조세부담률	17.9	18.7	18.9	19.9	20.7	21.2
(국세)	(14.2)	(14.7)	(14.8)	(15.6)	(16.3)	(16.5)
국민부담률 ^{1), 2)}	18.7	19.7	20.5	21.4	22.2	22.8
1인당 부담액	886	1,023	1,141	1,361	1,595	1,828
(국세)	(701)	(807)	(891)	(1,063)	(1,256)	(1,425)

주 : 1) 국민부담률 = (국세+지방세+사회보장기여금)/국민총생산(GNP)

단. 사회보장기여금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가진 특별회계와 정부 관리기금세입 중 고용자부담금과 피고용자부담금을 합한 수치임

2) 조세부담률 등을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국민총생산(GNP)으로 할 때보다 약 0.2%p 낮아지게 됨.

(단위 : %)

	1991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P)
조세부담률	17.8	18.6	18.8	19.8	20.5
국민부담률	18.9	19.6	20.4	21.3	22.0

조세부담률의 국제비교(1993년 기준)

(단위 : %)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
조세부담률	27.4	24.1	28.9	20.9	19.3	18.9
(국세부담률)	(26.1)	(21.0)	(20.2)	(11.5)	(12.1)	(14.8)
국민부담률	32.1	39.2	44.2	29.7	28.8	20.5



재정정보

재정통계

총재정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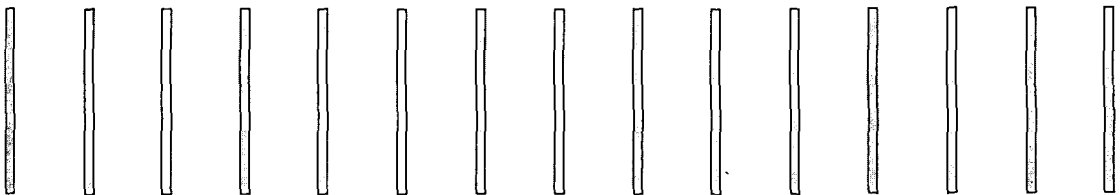
공공부문 규모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주요국의 조세부담률

우리나라 세수 구성의 변천

국제세계의 변천



1. 총재정 규모

(단위 : 억원, %)

	국민총생산 (경상)	중앙재정				지방재정		총재정규모		
		일반회계	대GNP 비율	특별회계	합 계	대GNP 비율	금 액	대 GNP 비율	금 액	대GNP 비율
1970	27,884	4,280	15.3	1,710	5,990	21.5	977	3.5	6,967	25.0
1971	34,191	5,161	15.1	2,197	7,358	21.5	1,245	3.6	8,603	25.2
1972	41,935	6,963	16.6	2,701	9,664	23.0	1,458	3.5	11,122	26.5
1973	53,775	6,554	12.2	3,048	9,602	17.9	1,864	3.5	11,466	21.3
1974	75,917	10,139	13.4	4,144	14,283	18.8	2,796	3.7	17,079	22.5
1975	101,292	15,353	15.2	5,883	21,236	21.0	3,565	3.5	24,801	24.5
1976	138,997	21,422	15.4	7,530	28,952	20.8	4,673	3.4	33,625	24.2
1977	177,958	27,399	15.4	9,778	37,177	20.9	7,067	4.0	44,244	24.9
1978	240,627	35,387	14.7	12,167	47,554	19.8	13,025	5.4	60,579	25.2
1979	308,721	50,532	16.4	14,133	64,665	20.9	18,089	5.9	82,754	26.8
1980	368,570	64,861	17.6	21,618	86,479	23.5	20,649	5.6	107,128	29.1
1981	457,029	79,078	17.3	27,771	106,849	23.4	26,226	5.7	133,075	29.1
1982	524,605	91,789	17.5	23,397	115,186	22.0	32,406	6.2	147,592	28.1
1983	620,860	101,808	16.4	24,218	126,026	20.3	42,236	6.8	168,262	27.1
1984	710,446	110,721	15.6	32,483	143,204	20.2	49,741	7.0	192,945	27.2
1985	793,011	124,064	15.6	25,939	150,003	18.9	56,383	7.1	206,386	26.0
1986	929,093	137,965	14.8	34,363	172,328	18.5	59,448	6.4	231,776	24.9
1987	1,097,265	157,945	14.4	33,625	191,569	17.5	60,286	5.5	251,855	23.0
1988	1,313,713	180,250	13.7	44,923	225,173	17.1	66,225	5.0	291,398	22.2
1989	1,479,416	216,531	14.6	53,426	269,957	18.2	81,383	5.5	351,340	23.7
1990	1,782,621	274,637	15.4	51,002	325,639	18.3	120,813	6.8	446,452	25.0
1991	2,142,399	312,835	14.6	80,834	393,669	18.4	165,098	7.7	558,767	26.1
1992	2,387,046	333,624	14.0	104,797	438,421	18.4	211,399	8.9	649,820	27.2
1993	2,655,179	372,680	14.0	139,199	511,879	19.3	226,930	8.5	738,809	27.8
1994	3,037,726	427,947	14.1	195,264	623,211	20.5	245,999	8.1	869,210	28.6

자료 : 재정경제원, 『재정관련통계집』



2. 공공부문 규모

(단위 : 억원, %)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A. 공공부문(1+2)	6,836	8,620	9,990	11,718	19,628	28,007	37,765	46,519	65,596	86,693	113,314	150,115
1. 중앙정부 ¹⁾	4,687	5,485	7,462	7,213	12,029	17,653	25,188	32,745	44,081	59,900	76,820	101,898
일반회계	2,848	3,670	4,461	4,617	6,953	9,962	14,420	25,701	33,004	47,071	59,678	72,285
특별회계	1,586	1,687	2,305	1,953	3,410	5,244	6,901	2,739	3,461	4,268	6,262	7,691
기금	108	49	117	27	698	1,323	2,093	2,603	4,336	6,008	7,134	15,251
세입세출외	145	79	579	616	968	1,124	1,774	1,702	3,280	2,553	3,746	6,671
2. 비금융공기업	2,149	3,135	2,528	4,505	7,599	10,354	12,577	13,774	21,515	26,793	36,494	48,217
기업회계	1,073	1,391	1,851	2,098	3,076	4,460	6,112	7,030	9,395	11,482	17,533	22,215
기금	1,076	1,744	677	2,407	4,523	5,894	6,465	6,744	12,120	15,311	18,961	26,002
B. 지방정부	2,923	3,788	3,675	3,996	5,613	8,083	10,719	15,020	20,761	29,807	37,716	49,075
일반회계	1,300	1,682	1,874	2,026	2,941	4,368	5,362	7,771	10,616	15,639	20,471	26,073
교육비특별회계	1,260	1,670	1,266	1,318	1,708	2,432	3,755	4,947	6,431	8,654	10,646	15,204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	363	436	535	652	964	1,283	1,602	2,302	3,714	5,514	6,599	7,798
C. 총공공부문(A+B)	9,759	12,408	13,665	15,714	25,241	36,090	48,484	61,539	86,357	116,500	151,030	199,190
국민총생산(경상)	27,884	34,191	41,935	53,775	75,917	101,292	138,997	177,958	240,627	308,721	368,570	457,029
D. 대GNP 비율												
총공공부문	35.0	36.3	32.6	29.2	33.2	35.6	34.9	34.6	35.9	37.7	41.0	43.6
중앙정부	16.8	16.0	17.8	13.4	15.8	17.4	18.1	18.4	18.3	19.4	20.8	22.3
비금융공기업	7.7	9.2	6.0	8.4	10.0	10.2	9.0	7.7	8.9	8.7	9.9	10.6
지방정부	10.5	11.1	8.8	7.4	7.4	4.3	7.7	8.4	8.6	9.7	10.2	5.7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55,469	160,924	177,048	189,262	201,105	220,359	253,615	305,844	393,746	474,469	537,716	583,361	690,484
116,393	122,001	134,446	148,671	159,267	181,800	208,815	256,772	332,961	403,116	449,934	490,466	601,253
85,525	95,263	103,354	114,889	128,565	147,137	162,650	189,987	228,984	262,330	288,568	319,681	355,044
8,443	8,034	8,811	11,043	13,472	12,800	24,478	40,491	55,630	83,520	99,537	109,830	158,503
15,753	13,091	15,932	14,007	12,391	14,524	17,973	22,622	41,039	52,288	52,409	58,075	81,956
6,672	5,613	6,349	8,732	4,839	7,339	3,714	3,672	7,308	4,978	9,420	2,880	5,750
39,076	38,923	4,2602	40,591	41,838	38,559	44,800	49,072	60,785	71,353	87,782	92,895	89,231
14,691	15,304	16,199	17,165	18,175	15,265	14,964	16,161	19,018	24,366	29,897	31,704	53,979
24,385	23,619	26,403	23,426	23,663	23,294	29,836	32,911	41,767	46,987	57,885	61,191	35,252
57,418	46,989		48,103	52,727	55,011	65,554	78,873	142,270	224,556	436,458	485,834	520,339
29,021	20,733		22,959	24,327	24,489	33,416	40,843	61,780	138,524	264,285	290,800	336,925
15,686	18,031		19,426	21,957	24,300	26,803	33,400	75,482	79,977	156,944	177,420	167,899
12,711	8,225		5,718	6,443	6,222	5,335	4,630	5,008	6,055	15,229	17,614	15,515
212,887	207,913	177,048	237,365	253,832	275,370	319,169	384,717	536,016	699,025	974,174	1,069,195	1,210,823
524,605	620,860	710,446	793,011	929,093	1,097,265	1,313,713	1,479,416	1,782,621	2,142,399	2,387,046	2,655,179	3,037,726
40.6	33.5	24.9	29.9	27.3	25.1	24.3	26.0	30.1	32.6	40.8	40.3	39.9
22.2	19.7	18.9	18.7	17.1	16.6	15.9	17.4	18.7	18.8	18.8	18.5	19.8
7.4	6.3	6.0	5.1	4.5	3.5	3.4	3.3	3.4	3.3	3.7	3.5	2.9
10.9	7.6		6.1	5.7	5.0	5.0	5.3	8.0	10.5	18.3	18.3	17.1

주 : 1) 1984년까지는 차입금상환 등 보전재원지출은 세출에서 제외한 것임.
 자료 : 재정경제원 : 『결산개요』 ; 재정경제원, 『예산개요 참고자료』

3.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

(단위 : 억원, %)

	국민총생산 (경상)	조세부담			조세부담률		
		총조세	국세 ¹⁾	지방세	총조세	국세 ¹⁾	지방세
1957	1,971	149	134	15	7.6	6.8	0.8
1958	2,047	185	168	17	9.0	8.2	0.8
1959	2,147	266	244	22	12.4	11.4	1.0
1960	2,449	295	273	22	12.0	11.1	0.9
1961	2,942	284	258	26	9.7	8.8	0.9
1962	3,555	382	330	52	10.7	9.3	1.5
1963	5,029	440	367	73	8.7	7.3	1.5
1964	7,163	521	433	88	7.3	6.0	1.2
1965	8,057	703	591	112	8.7	7.3	1.4
1966	10,370	1,126	966	159	10.9	9.3	1.5
1967	12,812	1,530	1,392	138	11.9	10.9	1.1
1968	16,529	2,300	2,107	193	13.9	12.7	1.2
1969	21,553	3,137	2,871	266	14.6	13.3	1.2
1970	27,884	3,981	3,648	332	14.3	13.1	1.2
1971	34,191	4,929	4,531	398	14.4	13.3	1.2
1972	41,935	5,229	4,763	466	12.5	11.4	1.1
1973	53,775	6,526	5,785	740	12.1	10.8	1.4
1974	75,917	10,217	9,137	1,080	13.5	12.0	1.4
1975	101,292	15,498	13,910	1,588	15.3	13.7	1.6
1976	138,997	23,133	20,927	2,206	16.6	15.1	1.6
1977	177,958	29,593	26,227	3,366	16.6	14.7	1.9
1978	240,627	40,955	36,523	4,433	17.0	15.2	1.8
1979	308,721	53,607	47,617	5,990	17.4	15.4	1.9
1980	368,570	65,754	58,077	7,677	17.8	15.8	2.1
1981	457,029	81,723	72,579	9,144	17.9	15.9	2.0
1982	524,605	95,156	83,964	11,192	18.1	16.0	2.1
1983	620,860	114,479	100,507	13,972	18.4	16.2	2.3
1984	710,446	124,082	108,997	15,085	17.5	15.3	2.1
1985	793,011	135,311	118,764	16,546	17.1	15.0	2.1
1986	929,093	154,161	136,063	18,098	16.6	14.6	1.9
1987	1,097,265	185,361	163,437	21,924	16.9	14.9	2.0
1988	1,313,713	225,831	194,842	30,989	17.2	14.8	2.4
1989	1,479,416	261,949	212,341	49,608	17.7	14.4	3.4
1990	1,782,621	332,148	268,474	63,674	18.6	15.1	3.6
1991	2,142,399	383,549	303,198	80,351	17.9	14.2	3.8
1992	2,387,046	446,806	352,184	94,622	18.7	14.8	4.0
1993	2,655,179	502,867	392,606	110,261	18.9	14.8	4.2
1994	3,037,726	604,929	472,618	132,311	19.9	15.6	4.4

주 : 1) 1989년까지 전매약금 포함.

자료 : 한국은행, 『국민계정』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4. 주요국의 조세부담률

(단위 : %)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사회보장비 제외	사회보장비 포함	사회보장비 제외	사회보장비 포함	사회보장비 제외	사회보장비 포함	사회보장비 제외	사회보장비 포함	사회보장비 제외	사회보장비 포함
1962	10.7	27.8	33.1	31.5	37.7	31.2	44.3	29.0	45.2	20.2	23.7
1963	8.7	28.0	33.6	29.8	36.1	31.3	44.6	29.4	46.5	19.8	23.5
1964	7.3	26.8	32.3	29.8	36.2	31.1	44.1	30.5	47.9	20.0	23.8
1965	8.7	26.8	32.1	31.3	38.2	30.1	43.2	30.4	48.1	19.4	23.8
1966	10.9	26.6	32.8	32.9	40.0	30.2	43.9	30.4	48.2	18.7	23.2
1967	11.9	26.9	33.5	35.3	42.5	30.8	44.9	29.5	47.7	19.0	23.4
1968	13.9	28.9	35.7	37.1	44.6	29.6	43.7	29.1	47.4	19.4	23.8
1969	14.6	30.3	37.5	40.0	47.4	32.1	46.9	29.9	48.8	20.1	24.6
1970	14.3	29.3	36.7	40.7	48.6	30.0	45.3	28.8	47.5	19.3	24.7
1971	14.4	28.5	36.1	38.0	45.5	30.7	46.5	27.6	46.6	19.5	25.4
1972	12.5	29.2	37.0	35.4	43.4	30.8	47.4	27.8	46.9	19.9	25.8
1973	12.1	28.5	37.2	33.9	42.0	32.5	50.1	28.0	47.3	21.7	27.6
1974	13.5	29.4	38.6	36.9	45.8	32.5	50.7	28.1	48.4	22.0	29.0
1975	15.3	27.8	36.9	37.8	47.6	31.1	50.1	27.5	49.6	19.0	26.5
1976	16.6	28.7	38.0	36.5	46.7	32.1	51.8	29.8	53.0	19.6	27.5
1977	16.6	28.7	38.1	37.2	47.5	33.5	53.3	28.5	52.2	20.0	28.5
1978	17.0	28.9	38.5	36.6	46.3	32.8	52.5	28.3	52.4	21.9	30.7
1979	17.4	27.9	34.0	39.3	49.0	32.6	52.2	29.3	54.6	22.5	31.5
1980	17.8	26.9	34.5	39.7	47.8	31.8	51.8	32.0	56.0	23.4	32.7
1981	17.9	27.5	35.5	42.6	51.1	31.2	52.1	32.6	56.9	23.0	32.6
1982	18.1	26.5	34.9	43.5	52.4	31.0	52.5	33.6	59.0	23.3	33.3
1983	18.4	25.8	34.1	42.0	51.3	30.9	51.7	33.1	59.0	23.7	33.7
1984	17.5	25.4	33.9	41.4	50.6	30.5	51.3	33.5	60.0	24.3	34.4
1985	17.1	25.7	34.5	41.4	50.6	30.8	51.7	33.9	60.4	24.6	34.8
1986	16.6	25.7	34.6	41.0	50.2	30.2	51.1	33.6	58.8	25.0	35.4
1987	16.9	26.2	35.0	40.6	49.7	30.2	51.3	34.1	59.7	26.6	37.2
1988	17.2	25.3	34.3	40.7	49.9	29.8	50.7	34.1	59.7	27.5	37.9
1989	17.7	26.1	35.2	40.3	48.9	30.9	51.3	33.7	59.5	27.8	38.2
1990	18.6	25.9	35.1	40.1	48.5	29.2	49.5	28.3	50.6	28.1	39.4
1991	17.9	25.6	35.0	39.4	48.0	26.1	42.7	28.5	50.8	27.4	38.9
1992	18.7	25.7	35.0	37.2	46.0	27.2	50.9	28.0	50.5	25.6	37.8
1993	18.9	25.9		35.7		32.1		28.2	50.9	25.3	37.9

자료 : 일본은행, 『국제비교통계』

5. 우리나라 세수 구성의 변천

(단위 : 억원, %)

	1965년		1970년		1980년		1990년		1994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조세 계	703	100.0	3,981	100.0	65,754	100.0	332,147	100.0	604,929	100.0
국세 계	546	77.7	3,348	84.1	52,977	80.6	268,474	80.8	472,618	78.1
소득세	117	16.6	845	21.2	6,614	10.1	47,231	14.2	112,078	18.5
법인세	57	8.1	424	10.7	4,852	7.4	32,261	9.7	73,876	12.2
토지초과이익세									561	0.1
상속세	0.5	0.1	9	0.2	29	0.0	710	0.2	5,236	0.9
증여세	0.7	0.1	6	0.2	67	0.1	2,249	0.7	3,838	0.6
자산재평가세	0.8	0.1	7	0.2	224	0.3	953	0.3	864	0.1
부당이득세					2	0.0				
영업세	44	6.3	310	7.8						
등록세	14	2.0	72	1.8						
부동산투기억제세			24	0.6						
부가가치세					14,712	22.4	69,644	21.0	130,580	21.6
특별소비세					5,825	8.9	19,118	5.8	24,456	4.0
주세	38	5.4	217	5.5	2,977	4.5	10,224	3.1	15,458	2.6
전화세					500	0.8	2,615	0.8	4,587	0.8
증권거래세			1	0.0	26	0.0	2,240	0.7	6,840	1.1
통행세	12	1.7	134	3.4						
물품세	70	10.0	317	8.0						
직물류세			107	2.7						
석유류세	32	4.6	213	5.4						
전기가스세	16	2.3	70	1.8						
입장세	7	1.0	46	1.2						
인지세	7	1.0	17	0.4	339	0.5	1,931	0.6	2,753	0.5
교통세									24,571	4.1
관세	128	18.2	509	12.8	7,661	11.7	27,654	8.3	34,489	5.7
방위세					8,558	13.0	44,306	13.3	767	0.1
교육세 ¹⁾							5,213	1.6	25,396	4.2
농어촌특별세									2,904	0.5
과년도수입	2	0.3	20	0.5	591	0.9	2,125	0.6	3,364	0.6
전매익금	45	6.4	301	7.6	5,100	7.8				
지방세계	112	15.9	332	8.3	7,677	11.7	63,673	19.2	132,311	21.9
취득세	17	2.4	111	2.8	1,630	2.5	11,649	3.5	23,446	3.9
재산세	8	1.1	40	1.0	1,194	1.8	2,272	0.7	4,807	0.8
면허세	5	0.7	12	0.3	182	0.3	480	0.1	1,686	0.3
등록세					1,224	1.9	13,776	4.1	30,857	5.1
자동차세	8	1.1	56	1.4	569	0.9	4,259	1.3	12,938	2.1
주민세					1,169	1.8	5,487	1.7	13,600	2.2
농지세	40	5.7	31	0.8	626	1.0	60	0.0	23	0.0
도축세	2	0.3	2	0.1	47	0.1	178	0.1	299	0.0
사업소세					307	0.5	1,456	0.4	2,531	0.4
유홍음식세	7	1.0	50	1.3						
도시계획세			22	0.6	510	0.8	2,436	0.7	5,640	0.9
소방시설세			5	0.1	130	0.2	861	0.3	1,829	0.3
지역개발세									545	0.1
경주마권세			2	0.1	27	0.0	565	0.2	1,768	0.3
토지과다보유세							11	0.0		
종합토지세							3,999	1.2	10,262	1.7
담배소비세							15,718	4.7	20,450	3.4
국세부가세 ²⁾	25	3.6								
과년도수입					62	0.1	466	0.1	1,630	0.3

주 : 1) 1994년은 지방양여금 및 지방교육양여금 포함.
 2) 소득세부가세, 법인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를 포함.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6. 국세체계의 변천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일반소득세					49.7.15 소득세로 세도미 공포												
소득세					49.7.15												
법인세					49.11.7												
특별법인세		46.12															
임시토지소득세							51.9.25									60.12.30	토지세로 통합
토지세																	60.12.30
지세							51.9.25	임시토지소득세로 시행정지									
광세																	
임시의환특별세														58.8.28			61.1.1
상속세																	
증여세						50.4.8											
자동차세																	59.1.1
자산재평가세														58.1.2			
부동산투기억제세																	
임시특별이득세																	
부당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																	
취인소득별세		46.1															
자본이자세				48.4													
사업세					49.8.13	영업세로 통합											
임시이득세		46.12															
외화채특별세				48.4													
이익배당세						49.10											
공사채이자세				48.4													
법인자본세						49.10											
등록세																	
조선은행권발행세						50.4											
인지세																	
취인세		46.1															
특별입장세				48.5													
마권세																	
광고세		46.8															
건축세		46.8															
면허세						50.3.10				54.3.31	지방세로 이양						
증권거래세																	
주세			47.11	음료세로 통합	1949.10.21	예 분리											
청량음료세			47.11	음료세로 통합	1949.10.21	예 분리	1950.12.1										
음료세			47.11	예 주세, 청량음료세를 통합	49.10.21												
굴패세						50.12.1	물품세로 통합										
물품세																	
직물세									54.3.31	물품세로 통합							
직물류세																	
시탕소비세		46.8															
입장세																	
통행세																	
우흥음식세																	
전기가스세																	
특별행위세					49.10												
영업세					49.8.13												
석유류세																	
전화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58.8.28			
방위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일반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특별법인세																	
임신토지소득세																	
토지세	62.1.1 지방세로 이양																
지세																	
광세	62.1.1 지방세로 이양																
임시외환특별세																	
상속세																	
증여세																	
자동차세	62.1.1 지방세로 이양																
자산재평가세																	
부동산투기억제세							88.1.1							75.1.1 소득세로 통합			
임시특별이득세		63.12.16	64.6.12														
부당이득세											73.1.14						
토지초과이득세																	
취인소득특별세																	
자본이자세																	
사업세																	
임시이득세																	
외화채특별세																	
이약배당세																	
공사채이자세																	
법인자본세																	
등록세																77.11 지방세로 이양	
조선은행권발행세																	
인지세																	
취인세																	
특별인장세																	
마권세	62.1.1 지방세로 이양																
광고세																	
건축세																	
면허세																	
증권거래세		63.1.1									72.1.1						78.12.5
주세																	
첨량음료세																	
음료세																	
골패세																	
물품세																	77.6.30 부가가치세
직물세																	
직물류세									70.1.1								77.6.30 부가가치세
사탕소비세																	
인장세																	77.6.30 부가가치세
통행세																	77.6.30 부가가치세
유홍음식세	62.1.1 지방세로 이양																77.1.1 77.6.30
전기가스세																	77.6.30 부가가치세
특별행위세																	
영업세																	77.6.30 부가가치세
석유류세	62.1.1																77.6.30 부가가치세
전화세							88.1.1 시행시 동시에 폐지					74.1.1					
부가가치세																	77.7.1
특별소비세																	77.7.1
교육세	62.1.1																
방위세														75.7.16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일반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특별법인세																		
임시토지소득세																		
토지세																		
지세																		
광채																		
임시의혹특별세																		
상속세																		
증여세																		
자동차세																		
자산재평가세																		
부동산투기억제세																		
임시특별소득세																		
부당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												90.11						
취인소득특별세																		
자부이자세																		
사업세																		
임시이득세																		
외화채특별세																		
이연배당세																		
공사채이자세																		
법인자본세																		
등록세																		
조선은행권발행세																		
인지세																		
취인세																		
특별입장세																		
마권세																		
광고세																		
건축세																		
면허세																		
증경거래세																		
주세																		
청량음료세																		
음료세																		
골페세																		
물품세																		
작문세																		
직물류세																		
사탕소비세																		
인장세																		
통행세																		
유출음식세																		
전기가스세																		
특별행위세																		
영업세																		
석유류세																		
전화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90.12.31						
방위세												90.12.31						
교통세																	94.11	
농어촌특별세																	94.7.1	

자료 : 국세청, 『국세청 30년사』